
지구단위계획의 결정에 필요한 관계서류 및 도면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2013. 04



목 차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도시관리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조서

I.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1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2
②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4
II. 도시계획시설	5
■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6
III.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26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7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	27
2. 지구단위계획구역 사유서	27
②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8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28
2.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70
3. 경관계획	96
4.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계획	102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	106

※ 별첨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1:3,000)
2. 도시계획시설 결정도(1:3,000)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1:3,000)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3,000)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1:3,000)

I.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①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1. 전주시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313,180,000	-	313,180,000	100.0	
주거지역	소 계	35,249,212	감) 12,393	35,236,819	11.3	
	제1종전용주거지역	174,318	감) 6,628	167,690	0.1	
	제2종전용주거지역	91,005	-	91,005	-	
	제1종일반주거지역	10,381,539	감) 14,311	10,367,228	3.3	
	제2종일반주거지역	17,221,913	감) 8,894	17,213,019	5.6	
	제3종일반주거지역	6,052,783	증) 16,085	6,068,868	1.9	
	준주거지역	1,327,654	증) 1,355	1,329,009	0.4	
상업지역	소 계	4,398,880	감) 2,150	4,396,730	1.4	
	중심상업지역	612,308	-	612,308	0.2	
	일반상업지역	3,786,572	감) 2,150	3,784,422	1.2	
	근린상업지역	-	-	-	-	
	유통상업지역	-	-	-	-	
공업지역	소 계	6,202,156	-	6,202,156	2.0	
	전용공업지역	1,444,200	-	1,444,200	0.5	
	일반공업지역	3,864,796	-	3,864,796	1.2	
	준공업지역	893,160	-	893,160	0.3	
녹지지역	소 계	258,681,352	증) 14,543	258,695,895	82.6	
	보전녹지지역	111,934,743	-	111,934,743	35.7	
	생산녹지지역	39,016,994	-	39,016,994	12.5	
	자연녹지지역	107,729,615	증) 14,543	107,744,158	34.4	
관리지역	소 계	2,755,000	-	2,755,000	0.8	
	보전관리지역	1,238,390	-	1,238,390	0.4	
	생산관리지역	734,150	-	734,150	0.2	
	계획관리지역	782,460	-	782,460	0.2	
농림지역		5,625,000	-	5,625,000	1.8	
자연환경보전지역		268,400	-	268,400	0.1	

※ 지정면적은 전주시고시 제2011-157호(2011.12.29)에 의한 용도지역면적임

2.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 용도지역 결정(변경)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1,434,193	-	1,434,193	100.0	
도시지역	소 계	1,130,537	감) 12,393	1,118,144	77.9	
	제1종전용주거지역	42,068	감) 6,628	35,440	2.5	
	제1종일반주거지역	240,599	감) 14,311	226,288	15.7	
	제2종일반주거지역	215,258	감) 8,894	206,364	14.4	
	제3종일반주거지역	387,499	증) 16,085	403,584	28.1	
	준주거지역	245,113	증) 1,355	246,468	17.2	
	일반상업지역	83,660	감) 2,150	81,510	5.7	
	자연녹지지역	219,996	증) 14,543	234,539	16.4	

3.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용도지역		면적 (㎡)	결정(변경)사유
	기정	변경		
1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2,068	공동주택용지의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2	준 주 거 지 역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405	공동주택용지의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3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자연녹지지역	72	연립주택용지의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4	자연녹지지역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3,813	업무용지의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5	자연녹지지역	준 주 거 지 역	873	업무용지의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6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자연녹지지역	6,628	단독주택용지의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7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제 1 종 전 용 주 거 지 역	15	단독주택용지의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8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자연녹지지역	12,508	단독주택용지의 녹지용지로의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9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자연녹지지역	189	문화시설용지의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10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제 1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25	문화시설용지의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11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13,080	학교용지의 공동주택용지로의 조정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12	일반상업지역	제 3 종 일 반 주 거 지 역	532	전주시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13	일반상업지역	준 주 거 지 역	859	전주시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14	일반상업지역	제 2 종 일 반 주 거 지 역	759	전주시 협의의견 반영에 따른 용도지역 변경

② 용도지구 결정(변경)조서

1. 미관지구(변경없음)

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 분	위 치	면적 (㎡)	연장(m)		폭원 (m)	최 초 결정일	비고
						양측	편측			
기정	29	서곡 미관지구	일반	21호 광장 → 서곡택지지구	113,591	3,263	2,080	12	전북112 (95.6.29)	
기정	71	황방산길변 미관지구	일반	29호 광장 → 대로1-5호선	179,342	6,731		12	전북112 (95.6.29)	

2. 방화지구(변경없음)

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지 구 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22	만성방화지구	방화지구	만성동 일원	81,510	-	-	-	

③ 용도지역 · 지구 결정(변경)도 (S=1/3,000)

• 별첨1

II. 도시계획시설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조서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총괄

구 분		류 별	폭 원 (m)	노선수		연 장(m)		면 적(㎡)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기 정	변 경
합 계		-	-	124	114	20,995	21,228	343,597	343,036
일 반	대 로	1류	35	1	1	1,499	1,499	54,300	55,082
		3류	26	1	1	331	331	12,264	12,258
	중 로	1류	20 ~ 23	7	8	5,323	5,721	133,198	141,490
		2류	15	16	16	3,616	3,231	55,888	50,050
		3류	12	1	1	134	8	1,627	117
	소 로	1류	10	43	42	6,518	5,801	67,018	57,546
		2류	8	10	10	120	273	1,089	2,613
		3류	6	17	5	982	1,748	2,803	7,293
보행자	중 로	1류	20	-	-	-	-	-	-
		2류	15	-	1	-	35	-	525
	소 로	1류	10	14	16	993	1,173	10,674	11,758
		3류	6	13	12	523	452	2,666	2,234
자전거	소 로	3류	1.5	1	1	956	956	2,070	2,070

도로 결정(변경)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1	16	35	주간선	1,499 (11,351)	29호광장	대로1-5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0는 총연장
변경	대로	1	16	35	주간선	1,499 (11,351)	29호광장	대로1-5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대로	3	2	26	보조간선	331	중로1-4	중로1-3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대로	3	2	26	보조간선	331	중로1-4	중로1-3	일반도로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1	20	보조간선	772	대로1-16	대로3-1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중로	1	1	20	보조간선	772	대로1-16	대로3-1	일반도로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2	23	보조간선	666	중로1-3	중로1-1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중로	1	2	23	보조간선	666	중로1-3	중로1-1	일반도로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3	23	보조간선	802	대로1-16	대로3-1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중로	1	3	23	보조간선	802	대로1-16	대로3-1	일반도로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4	23	보조간선	253 (277)	대로3-4	중로1-5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0는 총연장
변경	중로	1	4	23	보조간선	253 (277)	대로3-4	중로1-5	일반도로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5	20	집산도로	744	중로1-3	중로1-2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중로	1	6	20	집산도로	611	중로1-4	중로1-3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중로	1	6	20	집산도로	611	중로1-4	중로1-3	일반도로			선형 변경
신설	중로	1	7	22	집산도로	398	대로3-2	중로1-11	일반도로			
기정	중로	1	11	23	보조간선	1,475	대로3-4	대로1-7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중로	1	11	23	보조간선	1,475	대로3-4	대로1-7	일반도로			선형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집산도로	251	중로2-2	중로2-2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중로	2	2	15	집산도로	287	대로3-1	중로1-1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중로	2	2	15	집산도로	287	대로3-1	중로1-1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중로	2	3	15	집산도로	370	대로1-16	중로1-1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중로	2	4	15	집산도로	217	중로2-5	중로2-3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중로	2	5	15	집산도로	88	중로1-1	중로2-3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중로	2	6	15	집산도로	139	중로2-2	중로2-2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중로	2	7	15	집산도로	270	대로3-2	중로1-3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중로	2	7	15	집산도로	169	중로1-3	중로2-13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중로	2	8	15	집산도로	115	중로1-6	중로2-7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중로	2	8	15	집산도로	115	중로1-6	중로2-7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중로	2	9	15	집산도로	31	중로1-1	소로1-2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중로	2	10	15	집산도로	217	대로3-1	중로1-9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중로	2	10	15	집산도로	233	대로3-1	산111-1임	일반도로		-	
기정	중로	2	11	15	집산도로	346	대로3-1	중로1-2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중로	2	12	15	집산도로	34	중로1-3	소로1-14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중로	2	13	15	집산도로	398	대로3-1	대로3-2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중로	2	13	18	집산도로	101	대로3-2	중로2-7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중로	2	14	15	집산도로	468	대로3-2	중로1-11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중로	2	15	15	집산도로	160	대로1-16	중로1-6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중로	2	15	15	집산도로	160	대로1-16	중로1-6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중로	2	16	15	집산도로	216	중로1-2	중로1-5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중로	2	16	15	집산도로	216	중로1-2	중로1-5	일반도로		-	선형 변경
신설	중로	2	17	15	특수도로	35	소로1-12	중로1-3	보행자전용		-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134	대로3-1	1135-2전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8	대로3-1	1132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	10	국지도로	9	대로3-1	855-7전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2	10	국지도로	649	중로2-10	중로2-10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2	10	국지도로	533	중로2-10	중로2-10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	10	국지도로	204	중로2-10	중로2-10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3	10	국지도로	204	중로2-10	중로2-10	일반도로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4	10	국지도로	201	중로2-10	중로2-10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4	10	국지도로	201	중로2-10	중로2-10	일반도로			선형 변경
폐지	소로	1	5	10	국지도로	188	중로2-10	중로2-10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소로	1	6	10	국지도로	107	중로2-11	소로1-11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5	10	국지도로	107	중로2-11	소로1-10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7	10	국지도로	41	중로2-16	소로1-14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6	10	국지도로	41	중로2-16	소로1-13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8	10	국지도로	12	소로1-19	소로1-47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7	10	국지도로	12	소로1-16	소로1-45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9	10	국지도로	260	중로2-11	중로2-11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8	10	국지도로	260	중로2-11	중로2-11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10	10	국지도로	64	중로1-1	소로1-46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9	10	국지도로	64	중로1-1	소로1-43	일반도로			선형 변경
폐지	소로	1	11	10	국지도로	152	대로3-1	산144-1임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소로	1	12	10	국지도로	107	중로2-11	소로1-11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10	10	국지도로	107	중로2-11	소로1-8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13	10	국지도로	241	중로1-2	중로2-11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11	10	국지도로	176	중로1-2	중로2-1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14	10	국지도로	241	중로1-2	중로2-11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12	10	국지도로	241	중로1-2	중로2-11	일반도로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15	10	국지도로	217	중로1-2	중로1-5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13	10	국지도로	217	중로1-2	중로1-5	일반도로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16	10	국지도로	34	중로1-3	소로1-15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14	10	국지도로	34	중로1-3	소로1-12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17	10	국지도로	193	소로1-21	소로1-18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15	10	국지도로	184	중로2-7	중로2-7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18	10	국지도로	190	중로1-5	소로1-20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16	10	국지도로	190	중로1-5	소로1-18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19	10	국지도로	118	중로1-6	소로1-18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17	10	국지도로	118	중로1-6	중로2-7	일반도로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20	10	국지도로	124	대로1-16	중로1-5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18	10	국지도로	124	대로1-16	중로1-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21	10	국지도로	82	중로1-5	소로1-19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19	10	국지도로	82	중로1-5	소로1-17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22	10	국지도로	521	중로2-14	소로1-27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20	10	국지도로	125	중로2-14	소로1-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23	10	국지도로	195	소로1-29	소로1-22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21	10	국지도로	195	소로1-27	소로1-20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24	10	국지도로	131	소로1-39	소로1-22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22	10	국지도로	131	소로1-46	소로1-20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25	10	국지도로	138	소로1-39	소로1-22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23	10	국지도로	138	소로1-46	소로1-20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26	10	국지도로	353	중로1-4	중로2-14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24	10	국지도로	353	중로1-4	중로2-14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27	10	국지도로	280	소로1-29	소로1-42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25	10	국지도로	280	중로2-14	소로1-27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28	10	국지도로	158	소로1-29	소로1-27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26	10	국지도로	158	소로1-27	소로1-25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29	10	국지도로	157	중로2-14	소로1-22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27	10	국지도로	121	중로2-14	1034답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30	10	국지도로	81	중로2-14	소로1-26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28	10	국지도로	81	중로2-14	소로1-24	일반도로		-	선형 조정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31	10	국지도로	93	중로2-14	소로1-26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29	10	국지도로	93	중로2-14	소로1-24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32	10	국지도로	69	대로1-16	중로1-5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30	10	국지도로	69	대로1-16	중로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33	10	국지도로	93	중로2-14	소로1-26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31	10	국지도로	93	중로2-14	소로1-24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34	10	국지도로	66	중로2-14	소로1-28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32	10	국지도로	66	중로2-14	소로1-26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35	10	국지도로	93	중로2-14	소로1-26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33	10	국지도로	93	중로2-14	소로1-24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36	10	국지도로	130	중로1-4	중로1-6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34	10	국지도로	130	중로1-4	중로1-6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37	10	국지도로	213	대로3-2	중로1-6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35	10	국지도로	213	대로3-2	중로1-6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38	10	국지도로	93	중로2-14	소로1-26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36	10	국지도로	93	중로2-14	소로1-24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39	10	특수도로	44	중로1-7	중로2-2	보행자전용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37	10	특수도로	44	중로1-7	중로2-2	보행자전용			
기정	소로	1	40	10	특수도로	59	중로2-3	334답	보행자전용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38	10	특수도로	59	중로2-3	334답	보행자전용			
기정	소로	1	41	10	국지도로	68	중로2-14	소로1-26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39	10	국지도로	68	중로2-14	소로1-24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42	10	국지도로	28	중로1-4	소로1-27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40	10	국지도로	28	중로1-4	소로1-25	일반도로		-	선형 변경
기정	소로	1	43	10	특수도로	41	중로2-3	중로2-4	보행자전용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41	10	특수도로	41	중로2-3	중로2-4	보행자전용			
기정	소로	1	44	10	특수도로	32	중로1-1	중로2-4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42	10	특수도로	32	중로1-1	중로2-4	일반도로			
기정	소로	1	45	10	특수도로	14	소로1-10	307-15도	보행자전용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43	10	특수도로	14	소로1-10	307-15도	보행자전용			선형 변경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1	46	10	국지도로	112	중로2-14	소로1-23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선형 변경
변경	소로	1	44	10	국지도로	112	중로2-14	소로1-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47	10	특수도로	22	중로1-3	소로1-8	보행자전용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45	10	특수도로	22	중로1-3	소로1-7	보행자전용		-	
기정	소로	1	48	10	국지도로	112	중로2-14	소로1-23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선형 변경
변경	소로	1	46	10	국지도로	112	중로2-14	소로1-21	일반도로		-	
기정	소로	1	49	10	특수도로	29	대로3-1	소로1-12	보행자전용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선형 변경
변경	소로	1	47	10	특수도로	29	대로3-1	소로1-10	보행자전용			
기정	소로	1	50	10	특수도로	236	중로1-2	중로1-5	보행자전용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48	10	특수도로	236	중로1-2	중로1-5	보행자전용		-	
기정	소로	1	51	10	특수도로	29	중로1-9	중로2-11	보행자전용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49	10	특수도로	31	중로1-9	중로2-11	보행자전용			
기정	소로	1	52	10	특수도로	200	중로1-2	중로1-8	보행자전용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50	10	특수도로	204	중로1-2	중로1-8	보행자전용		-	
기정	소로	1	53	10	특수도로	172	중로2-13	중로1-3	보행자전용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51	10	특수도로	172	중로2-13	중로1-3	보행자전용		-	
기정	소로	1	54	10	특수도로	22	446답	중로2-13	보행자전용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52	10	특수도로	25	446답	중로2-13	보행자전용		-	
기정	소로	1	55	10	특수도로	26	대로3-2	소로1-16	보행자전용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53	10	특수도로	26	대로3-2	소로1-16	보행자전용		-	
기정	소로	1	56	10	특수도로	29	중로2-15	중로1-3	보행자전용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54	10	특수도로	22	중로2-15	중로1-3	보행자전용		-	
기정	소로	1	57	10	특수도로	91	대로1-16	575-2답	보행자전용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1	55	10	특수도로	91	대로1-16	575-2답	보행자전용		-	
기정	소로	1	58	10	국지도로	29	중로1-4	소로1-37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선형 변경
변경	소로	1	56	10	국지도로	29	중로1-4	소로1-35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57	10	국지도로	12	소로1-11	소로1-54	일반도로		-	
신설	소로	1	58	10	국지도로	125	중로1-11	산146-4임	보행자전용		-	
폐지	소로	1	59	10	국지도로	20	448-2답	소로1-22	보행자전용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소로	2	1	8	집산도로	12	대로1-16	12전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2	1	8	집산도로	8	대로1-16	소로3-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2	8	집산도로	12	대로1-16	236-2전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2	2	8	집산도로	8	대로1-16	소로3-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3	8	집산도로	13	대로1-16	234-1전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2	3	8	집산도로	8	대로1-16	소로3-15	일반도로			
기정	소로	2	4	8	집산도로	13	대로1-16	194-5임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2	4	8	집산도로	9	대로1-16	소로3-15	일반도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5	8	집산도로	12	대로1-16	146-1전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2	5	8	집산도로	8	대로1-16	소로3-1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6	8	집산도로	13	대로1-16	580-1답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2	6	8	집산도로	9	대로1-16	소로3-1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7	8	집산도로	12	대로1-16	299-1답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소로	2	7	8	집산도로	8	대로1-16	소로3-1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8	8	집산도로	12	대로1-16	141-14답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변경	소로	2	8	8	집산도로	8	대로1-16	소로3-1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9	8	집산도로	17	중로1-11	905-9전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변경	소로	2	9	8	집산도로	203	중로1-11	산144-3임	일반도로		-	
기정	소로	2	10	8	국지도로	4	소로1-11	958-1답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기정	소로	3	1	1.5	특수도로	956	2-1전	대로3-1	자전거전용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소로	3	2	6	국지도로	85	중로1-11	소로3-31	일반도로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소로	3	3	4	국지도로	6	소로1-2	소로3-15	일반도로		-	
기정	소로	3	4	6	특수도로	20	451답	소로1-23	보행자전용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변경	소로	3	4	6	특수도로	20	451답	소로1-23	보행자전용		-	
기정	소로	3	5	6	특수도로	33	소로1-2	중로1-1	보행자전용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기정	소로	3	6	6	특수도로	46	소로1-3	소로1-2	보행자전용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기정	소로	3	7	6	특수도로	46	소로1-4	소로1-3	보행자전용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기정	소로	3	8	6	특수도로	46	소로1-5	소로1-4	보행자전용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기정	소로	3	9	6	특수도로	46	중로2-10	소로1-5	보행자전용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변경	소로	3	9	4	특수도로	18	소로3-2	599-1전	보행자전용		-	
기정	소로	3	10	6	특수도로	35	소로1-22	소로1-23	보행자전용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변경	소로	3	10	4	특수도로	18	소로3-2	606답	보행자전용		-	
폐지	소로	3	11	6	특수도로	35	소로1-22	소로1-27	보행자전용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기정	소로	3	12	4	특수도로	36	소로1-27	소로1-28	보행자전용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변경	소로	3	11	4	특수도로	36	소로1-25	소로1-26	보행자전용		-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 점	종 점	사용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3	13	4	특수도로	66	소로1-28	중로2-14	보행자전용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변경	소로	3	12	4	특수도로	66	소로1-26	중로2-14	보행자전용			
폐지	소로	3	14	4	특수도로	36	소로1-27	소로1-28	보행자전용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기정	소로	3	15	4	특수도로	10	소로3-3	900전	보행자전용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변경	소로	3	13	4	특수도로	36	소로1-27	소로1-28	보행자전용			
기정	소로	3	16	6	특수도로	68	중로1-1	중로1-5	보행자전용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변경	소로	3	14	6	특수도로	68	중로1-1	중로1-5	보행자전용			
신설	소로	3	15	4	국지도로	1,512	623-1답	1138-8도	일반도로			
폐지	소로	3	17	4	국지도로	26	소로2-1	14-16답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폐지	소로	3	18	4	국지도로	83	소로2-4	206-9대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폐지	소로	3	19	4	국지도로	22	소로2-8	300-6대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폐지	소로	3	20	4	국지도로	45	소로2-2	236-10전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폐지	소로	3	21	2	국지도로	47	소로2-8	15-6답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기정	소로	3	22	2	국지도로	119	소로2-10	905-11전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변경	소로	3	16	4	국지도로	100	소로2-10	905-11전	일반도로		-	
폐지	소로	3	23	2	국지도로	39	소로2-3	234-2전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폐지	소로	3	24	2	국지도로	103	소로2-3	225-1답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폐지	소로	3	25	2	국지도로	103	소로3-21	227-8답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폐지	소로	3	26	2	국지도로	68	소로2-4	173-13답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폐지	소로	3	27	2	국지도로	52	소로2-5	173-12답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폐지	소로	3	28	2	국지도로	71	소로2-5	142-7답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폐지	소로	3	29	2	국지도로	51	소로2-9	141-15답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폐지	소로	3	30	2	국지도로	38	소로2-9	138-1답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기정	소로	3	31	2	국지도로	24	소로3-2	896-3전	일반도로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변경	소로	3	17	4	국지도로	45	소로3-2	899-1전	일반도로		-	
신설	소로	3	18	4	특수도로	20	소로3-3	900전	보행자전용		-	

■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대1-16	좌동	· 도로 선형 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대3-2	"	· 도로 선형 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중1-1	"	· 도로 선형 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중1-2	"	· 도로 선형 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중1-3	"	· 도로 선형 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중1-4	"	· 도로 선형 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중1-5	"	· 도로 선형 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중1-6	"	· 도로 선형 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	중1-7	· 도로 신설 (B = 18m L = 398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중1-11	"	· 도로 선형 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중2-2	"	· 도로 선형 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중2-7	"	· 도로 연장 변경 (B = 15m L = 270m→169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조정
중2-8	"	· 도로 선형 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중2-10	"	· 도로 위치 및 연장 변경 (B = 15m L = 217m→233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위치 및 연장 조정
중로2-13	"	· 도로 위치 및 폭원 · 연장 변경 (B = 15m→18m, L = 398m→101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위치 및 폭원 · 연장 조정
중2-15	"	· 도로 선형 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중2-16	"	· 도로 선형 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	중2-17	· 도로 신설 (B = 15m L = 35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중로3-1	"	· 도로 위치 및 연장 변경 (B = 12m L = 134m→8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위치 및 연장 조정
소로1-2	"	· 도로 연장 변경 (B = 10m L = 649m→533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조정
소로1-3	"	· 도로 선형 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소로1-4	"	· 도로 선형 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선형 조정
소로1-5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로1-6	소로1-5	· 도로명 변경 및 선형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및 선형 조정
소로1-7	소로1-6	· 도로명 변경 및 선형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및 선형 조정
소로1-8	소로1-7	· 도로명 변경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조정
소로1-9	소로1-8	· 도로명 변경 및 선형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및 선형 조정
소로1-10	소로1-9	· 도로명 변경 및 선형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및 선형 조정
소로1-11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illegible]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로1-40	소로1-38	· 도로명 변경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조정
소로1-41	소로1-39	· 도로명 변경 및 선형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및 선형 조정
소로1-42	소로1-40	· 도로명 변경 및 선형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및 선형 조정
소로1-43	소로1-41	· 도로명 변경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조정
소로1-44	소로1-42	· 도로명 변경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조정
소로1-45	소로1-43	· 도로명 변경 및 선형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및 선형 조정
소로1-46	소로1-44	· 도로명 변경 및 선형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및 선형 조정
소로1-47	소로1-45	· 도로명 변경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조정
소로1-48	소로1-46	· 도로명 변경 및 선형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및 선형 조정
소로1-49	소로1-47	· 도로명 변경 및 선형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및 선형 조정
소로1-50	소로1-48	· 도로명 변경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조정
소로1-51	소로1-49	· 도로명 및 연장 변경 (B = 10m L = 29m→31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및 연장 조정
소로1-52	소로1-50	· 도로명 및 연장 변경 (B = 10m L = 200m→204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및 연장 조정
소로1-53	소로1-51	· 도로명 변경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조정
소로1-54	소로1-52	· 도로명 및 연장 변경 (B = 10m L = 22m→25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및 연장 조정
소로1-55	소로1-53	· 도로명 변경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조정
소로1-56	소로1-54	· 도로명 및 연장 변경 (B = 10m L = 29m→22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및 연장 조정
소로1-57	소로1-55	· 도로명 변경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조정
소로1-58	소로1-56	· 도로명 변경 및 선형조정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및 선형 조정
소로1-57	좌동	· 도로 신설 (B = 10m L = 12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1-58	"	· 도로 신설 (B = 10m L = 125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소로1-59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2-1	좌동	· 도로 연장 변경 (B = 8m L = 12m→8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조정
소2-2	"	· 도로 연장 변경 (B = 8m L = 12m→8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조정
소2-3	"	· 도로 연장 변경 (B = 8m L = 13m→8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조정
소2-4	"	· 도로 연장 변경 (B = 8m L = 13m→9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조정
소2-5	"	· 도로 연장 변경 (B = 8m L = 12m→8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조정
소2-6	"	· 도로 연장 변경 (B = 8m L = 13m→9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조정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 용	변 경 사 유
소2-7	좌동	· 도로 연장 변경 (B = 8m L = 12m→8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조정
소2-8	"	· 도로 연장 변경 (B = 8m L = 12m→8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조정
소2-9	"	· 도로 연장 변경 (B = 8m L = 17m→203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연장 조정
소3-4	"	· 도로 폭원 변경 (B = 6m→4m, L = 20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폭원 조정
소3-9	"	· 도로 위치 및 폭원 · 연장 변경 (B = 6m→4m L = 46m→18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위치 및 폭원·연장 조정
소3-10	"	· 도로 위치 및 폭원 · 연장 변경 (B = 6m→4m L = 35m→18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위치 및 폭원·연장 조정
소3-11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12	소3-11	· 도로명 변경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조정
소3-13	소3-12	· 도로명 변경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조정
소3-14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15	소3-13	· 도로명 변경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조정
소3-16	소3-14	· 도로명 변경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명 조정
소3-15	좌동	· 도로 신설 (B = 4m L = 1,512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소3-17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18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19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20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21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22	소3-16	· 도로 위치 및 폭원 · 연장 변경 (B = 2m→4m L = 119m→100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위치 및 폭원·연장 조정
소3-23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24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25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26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27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28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29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30	-	· 도로 폐지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폐지
소3-31	소3-17	· 도로 폭원 연장 변경 (B = 2m→4m L = 24m→45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폭원 및 연장 조정
소3-18	소3-18	· 도로 신설 (B = 4m L = 20m)	·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도로 신설

나. 주차장(변경)

■ 주차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 설 명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029-3전 일원	2,115	-	2,115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2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69-1대 일원	1,578	-	1,578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3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511-1대 일원	3,762	감)10	3,752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4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376-1답 일원	1,216	감)1	1,215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5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376-3답 일원	2,278	감)18	2,260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6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313답 일원	2,734	-	2,734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7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382전 일원	1,990	증)1	1,991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8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07답 일원	1,465	감)12	1,453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9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07답 일원	2,037	-	2,037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10	주차장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599전 일원	1,483	-	1,483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3	주차장	·면적감소 A=3,762㎡ → 3,752㎡ 감) 10㎡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이용 재조정
4	주차장	·면적감소 A=1,216㎡ → 1,215㎡ 감) 1㎡	"
5	주차장	·면적감소 A=2,278㎡ → 2,260㎡ 감) 18㎡	"
7	주차장	·면적증가 A=1,990㎡ → 1,991㎡ 증) 1㎡	"
8	주차장	·면적감소 A=1,465㎡ → 1,453㎡ 감) 12㎡	"

2. 공간시설(변경)

가. 광장(변경)

■ 광장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9	광장	교통광장	팔복동 제2공단 입구	13,450	-	13,450 (7,187)	95.06.29 (전라북도 고시 제1995-112호)	0는 구역내
기정	1	광장	교통광장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06전 일원	201	-	201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2	광장	일반광장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290대 일원	3,868	증) 1	3,869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3	광장	교통광장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281-3답 일원	201	-	201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4	광장	교통광장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00-8전 일원	201	-	201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5	광장	교통광장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242답 일원	201	-	201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2	교통광장	·면적증가 A=3,868㎡ → 3,869㎡, 증) 1㎡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교통광장 면적조정

나. 녹지(변경)

■ 녹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40-6대 일원	20,990	증) 671	21,661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957답 일원	20,446	증) 3,716	24,162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73-1답 일원	31,887	감) 15,394	16,493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606답 일원	3,718	증) 20	3,738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283답 일원	14,062	증) 41	14,103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1	녹지	연결녹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산105-2임 일원	17,817	감) 4,984	12,833	11.12.29 (전주시 고시 제2011-157호)	
신설	2	녹지	연결녹지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73-1답 일원	-	증) 11,546	11,546	-	

■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완충녹지	·면적증가 : A=20,990㎡→A=21,661㎡, 증)671㎡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증가
2	완충녹지	·면적증가 : A=20,446㎡→A=24,162㎡, 증)3,716㎡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증가
3	완충녹지	·면적감소 : A=31,887㎡→A=16,493㎡, 감)15,394㎡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4	완충녹지	·면적증가 : A=3,718㎡→A=3,738㎡, 증)20㎡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증가
5	완충녹지	·면적증가 : A=14,062㎡→A=14,103㎡, 증)41㎡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증가
1	연결녹지	·면적감소 : A=17,817㎡→A=12,833㎡, 감)4,984㎡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2	연결녹지	·신설 : A=11,546㎡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신설

다. 공원(변경)

■ 공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원	수변공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063유 일원	55,261	감)214	55,047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1	공원	문화공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322답 일원	17,489	증)530	18,019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58답 일원	44,105	증)14,477	58,582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2	공원	근린공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962전 일원	12,283	증)4,321	16,604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1	공원	어린이공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산148-5임 일원	3,137	-	3,137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2	공원	어린이공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575-2답 일원	2,500	증)131	2,631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3	공원	어린이공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398-20전 일원	2,092	감)213	1,879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4	공원	어린이공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573답 일원	8,502	감)1,607	6,895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기정	5	공원	어린이공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028-2전 일원	1,514	-	1,514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수변공원	·면적감소 : A=55,261㎡→A=55,047㎡, 감) 214㎡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1	문화공원	·면적증가 : A=17,489㎡→A=18,019㎡, 증) 530㎡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증가
1	근린공원	·면적증가 : A=44,105㎡→A=58,582㎡, 증) 14,477㎡	"
2	근린공원	·면적증가 : A=12,283㎡→A=16,604㎡, 증) 4,321㎡	"
2	어린이공원	·면적증가 : A=2,500㎡ → 2,631㎡, 증) 131㎡	"
3	어린이공원	·면적감소 : A=2,092㎡ → 1,879㎡, 감) 213㎡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녹지면적 감소
4	어린이공원	·면적감소 : A=8,502㎡ → 6,895㎡, 감) 1,607㎡	"

3. 유통 및 공급시설(변경)

가.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가스공급설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시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329답 일원	8,315	-	8,315	94.06.07 (전주시 고시 제1994-34호)	
기정	2	가스공급설비	가스공급시설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55-7전 일원	2,649	-	2,649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자구 정압기

나. 방송·통신시설(변경)

■ 방송·통신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307-6대 일원	6,644	증) 91	6,735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2	방송·통신시설	방송국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289-1대 일원	7,031	증) 82	7,113	-	

■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방송·통신시설	·면적증가 : A=6,644㎡→A=6,735㎡, 증)91㎡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2	방송·통신시설	·면적증가 : A=7,031㎡→A=7,113㎡, 증)82㎡	"

4. 공공·문화체육시설(변경)

가. 학교(변경)

■ 학교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학교	초등학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588-4전 일원	11,548	감)11,548	-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2	학교	초등학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산119-1입 일원	10,951	증)2,049	13,000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1	학교	중학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962-1전 일원	11,239	증)2,766	14,005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초등학교	·폐지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2	초등학교	·면적증가 : A=10,951㎡ → A=13,000㎡, 증) 2,049㎡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1	중학교	·면적증가 : A=11,239㎡ → A=14,005㎡, 증)2,766㎡	"

나. 공공청사(변경)

■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공공청사	법원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39대 일원	32,755	증)227	32,982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2	공공청사	검찰청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산95-1입 일원	33,097	증)138	33,235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3	공공청사	공공청사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50-1답 일원	660	증)34	694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4	공공청사	공공청사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82대 일원	911	증)89	1,000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5	공공청사	공공청사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75-2전 일원	1,527	감)1,527	-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6	공공청사	공공청사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16-1전 일원	2,597	증)67	2,664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공공청사	·면적증가 A=32,755㎡ → A=32,982㎡, 증)227㎡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2	공공청사	·면적증가 A=33,097㎡ → A=33,235㎡, 증)138㎡	"
3	공공청사	·면적증가 A=660㎡ → A=694㎡, 증)34㎡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4	공공청사	·면적감소 A=911㎡ → A=1,000㎡, 증)89㎡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5	공공청사	·폐지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폐지
6	공공청사	·면적증가 A=2,597㎡ → A=2,664㎡, 증)67㎡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5. 방재시설(변경없음)

가. 유수지(저류시설)

■ 유수지(저류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유수지	저류시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054유 일원	7,628	증) 2,229	9,857	-	근린공원1내 중복결정
변경	2	유수지	저류시설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075-11임 일원	23,745	증) 1,178	24,923	-	수변공원1내 중복결정

■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저류시설	면적증가 A=7,628㎡ → A=9,857㎡, 증) 2,229㎡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증가
2	저류시설	면적증가 A=23,745㎡ → A=24,923㎡, 증) 1,178㎡	"

6.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하수도(변경)

■ 하수도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1	오수중계 펌프장	오수중계 펌프장	전주시 덕진구 여의동 855-20전 일원	724	감) 1	723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변경	2	오수중계 펌프장	오수중계 펌프장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1050-4유 일원	100	-	100	09.12.10 (전주시 고시 제2009-131호)	

■ 결정(변경)사유서

도 면 표시번호	시설명	변 경 내 용	변 경 사 유
1	오수중계 펌프장	·면적감소 A=724㎡ → A=723㎡, 감) 1㎡	전주 만성 도시개발사업의 토지이용계획 변경에 따른 면적 감소

7.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S=1/3,000)

· 별첨 2

Ⅲ.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조서(변경없음)

구역명	위 치	면 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전주 만성 지구단위계획구역	전주시 덕진구 만성동 400번지 일원	1,434,193	-	1,434,193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3,000)

- 별첨 3

②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1.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법조타운용지(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법	-	32,755	만성동 439대 일원	32,75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검	-	33,097	만성동 산95-1임 일원	33,097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법	-	32,982	만성동 439대 일원	32,982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검	-	33,235	만성동 산95-1임 일원	33,23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나. 상업·업무시설용지(변경)

1) 상업시설용지(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상1	①	2,754	-1	918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918	
			-3	918	
	②	3,894	-1	778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779	
			-3	779	
			-4	779	
			-5	779	
	③	2,454	-1	1,232	필지의 분할 불허. 합병 허용
			-2	1,222	
	④	3,662	-1	1,328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1,213	
			-3	1,121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상2	①	3,115	-1	1,026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1,094	
			-3	995	
	②	1,316	-1	1,316	필지의 분할 불허.
	③	2,981	-1	74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778	
			-3	778	
			-4	678	
	④	4,971	-1	1,233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938	
			-3	955	
			-4	940	
			-5	905	
상3	①	3,350	-1	611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685	
			-3	685	
			-4	685	
			-5	684	
	②	3,361	-1	654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685	
			-3	685	
			-4	685	
			-5	652	
	③	1,558	-1	829	필지의 분할 불허. 합병 허용
			-2	729	
	④	7,099	-1	649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720	
			-3	720	
			-4	720	
			-5	745	
			-6	735	
			-7	720	
			-8	720	
			-9	720	
			-10	65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⑤	7,096	-1	714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720	
			-3	720	
			-4	720	
			-5	679	
			-6	679	
			-7	720	
			-8	720	
			-9	720	
			-10	704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상1	①	2,733	-1	908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917	
			-3	908	
	②	3,869	-1	763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779	
			-3	779	
			-4	779	
			-5	769	
	③	2,450	-1	1,229	필지의 분할 불허. 합병 허용
			-2	1,221	
	④	3,640	-1	1,311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1,212	
			-3	1,117	
상2	①	3,098	-1	1,018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1,094	
			-3	986	
	②	3,378	-1	1,122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1,121	
			-3	1,135	
	③	2,971	-1	73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778	
			-3	778	
			-4	678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상2	④	4,973	-1	1,233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938	
			-3	955	
			-4	940	
			-5	907	
상3	①	3,854	-1	691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790	
			-3	790	
			-4	790	
			-5	793	
	②	3,609	-1	726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721	
			-3	721	
			-4	721	
			-5	720	
	③	1,981	-1	1,049	필지의 분할 불허. 합병 허용
			-2	932	
	④	6,549	-1	596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668	
			-3	668	
			-4	668	
			-5	681	
			-6	672	
			-7	668	
			-8	668	
			-9	668	
			-10	592	
	⑤	6,414	-1	652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668	
			-3	668	
			-4	668	
			-5	496	
			-6	615	
			-7	668	
			-8	668	
			-9	668	
			-10	643	

2) 업무시설용지(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업1	①	5,017	-1	1,088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982	
			-3	982	
			-4	982	
			-5	983	
	②	993	-1	993	필지의 분할 불허
	③	3,077	-1	1,016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1,016	
			-3	1,045	
	④	2,761	-1	924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923	
			-3	914	
업2	①	2,134	-1	674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764	
			-3	696	
	②	619	-1	619	필지의 분할 불허
	③	5,281	-1	749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749	
			-3	750	
			-4	686	
			-5	911	
			-6	686	
			-7	750	
	④	2,162	-1	916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662	
			-3	584	
업3	①	3,020	-1	755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755	
			-3	755	
			-4	755	
	②	2,064	-1	681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681	
			-3	702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업1	①	5,017	-1	1,088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982	
			-3	982	
			-4	982	
			-5	983	
	②	1,080	-1	1080	필지의 분할 불허
	③	3,164	-1	1,103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1,016	
			-3	1,045	
	④	2,752	-1	924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923	
			-3	905	
업2	①	2,596	-1	565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672	
			-3	696	
			-4	663	
	②	6,056	-1	63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750	
			-3	686	
			-4	955	
			-5	955	
			-6	686	
			-7	750	
			-8	637	
	③	2,519	-1	1,075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775	
			-3	669	
업3	①	3,612	-1	720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723	
			-3	723	
			-4	723	
			-5	723	
	②	3,315	-1	663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663	
			-3	663	
			-4	663	
			-5	663	

다. 첨단산업지원용지(변경없음)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산1	①	2,683	-1	1,335	필지의 분할 불허. 합병 허용
			-2	1,348	
	②	11,698	-1	1,497	연접한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합병 허용 합병후 합병전 획지선으로 1회에 한하여 분할가능
			-2	1,695	
			-3	1,696	
			-4	1,695	
			-5	2,723	
			-6	1,196	
			-7	1,196	
	③	7,027	-1	3,503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3,524	
산2	①	36,147	-1	8,216	연접한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합병 허용
			-2	6,986	
			-3	6,986	
			-4	6,987	
			-5	6,972	

라. 주택건설용지 (변경)

1) 단독주택 용지(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단독1	①	2,597	-1	280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81	
			-3	281	
			-4	278	
			-5	258	
			-6	223	
			-7	217	
			-8	245	
			-9	267	
			-10	267	
	②	3,737	-1	266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56	
			-3	256	
			-4	256	
			-5	258	
			-6	256	
			-7	258	
			-8	276	
			-9	275	
			-10	275	
	③	2,692	-1	270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70	
			-3	270	
			-4	270	
			-5	267	
			-6	265	
			-7	27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단독1	③		-8	270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9	270	
			-10	270	
	④	4,435	-1	254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74	
			-3	274	
			-4	274	
			-5	274	
			-6	274	
			-7	274	
			-8	269	
			-9	283	
			-10	284	
			-11	284	
			-12	284	
			-13	284	
			-14	284	
			-15	284	
			-16	281	
	⑤	4,840	-1	265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67	
			-3	267	
			-4	267	
			-5	267	
			-6	267	
			-7	267	
			-8	267	
			-9	261	
			-10	265	
			-11	273	
			-12	273	
			-13	273	
			-14	273	
			-15	273	
			-16	273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단독1	⑤		-17	273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18	269	
	⑥	2,762	-1	27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77	
			-3	277	
			-4	277	
			-5	277	
			-6	277	
			-7	277	
			-8	278	
			-9	278	
			-10	267	
	⑦	3,335	-1	274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80	
			-3	280	
			-4	280	
			-5	280	
			-6	275	
			-7	275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8	280	
			-9	279	
			-10	279	
			-11	279	
			-12	274	
	⑧	3,335	-1	274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80	
			-3	280	
			-4	280	
			-5	280	
			-6	275	
			-7	275	
			-8	280	
			-9	279	
			-10	279	
			-11	27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단독1	⑧		-12	274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⑨	3,874	-1	276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77	
			-3	277	
			-4	277	
			-5	277	
			-6	277	
			-7	276	
			-8	276	
			-9	277	
			-10	277	
			-11	277	
			-12	277	
			-13	277	
			-14	276	
	⑩	4,159	-1	259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59	
			-3	258	
			-4	258	
			-5	258	
			-6	258	
			-7	258	
			-8	266	
			-9	268	
			-10	260	
			-11	260	
			-12	260	
			-13	260	
			-14	259	
			-15	259	
			-16	259	
	⑪	1,226	-1	30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303	
			-3	306	
			-4	31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단독1	⑫	1,889	-1	288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88	
			-3	287	
			-4	255	
			-5	257	
			-6	257	
			-7	257	
	⑬	2,197	-1	266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65	
			-3	265	
			-4	265	
			-5	287	
			-6	283	
			-7	283	
			-8	283	
	⑭	2,782	-1	272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69	
			-3	269	
			-4	269	
			-5	270	
			-6	287	
			-7	286	
			-8	286	
			-9	286	
			-10	288	
	⑮	2,936	-1	23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46	
			-3	246	
			-4	246	
			-5	246	
			-6	24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단독1	⑮		-7	245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8	246	
			-9	246	
			-10	246	
			-11	246	
			-12	241	
	⑯	2,936	-1	23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46	
			-3	246	
			-4	246	
			-5	246	
			-6	245	
			-7	245	
			-8	246	
			-9	246	
			-10	246	
			-11	246	
			-12	241	
	⑰	2,947	-1	238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46	
			-3	246	
			-4	246	
			-5	246	
			-6	245	
			-7	247	
			-8	248	
			-9	248	
			-10	248	
			-11	248	
			-12	241	
	⑱	2,061	-1	278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단독1	⑱		-2	275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3	246	
			-4	248	
			-5	250	
			-6	252	
			-7	254	
			-8	258	
	⑲	1,536	-1	256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56	
			-3	256	
			-4	256	
			-5	256	
			-6	256	
	⑳	2,347	-1	26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60	
			-3	260	
			-4	260	
			-5	260	
			-6	260	
			-7	260	
			-8	260	
			-9	260	
단독2	㉑	3,725	-1	271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72	
			-3	293	
			-4	314	
			-5	308	
			-6	302	
			-7	291	
			-8	290	
			-9	294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단독2	①		-10	267	
			-11	270	
			-12	272	
			-13	281	
	②	2,667	-1	29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97	
			-3	296	
			-4	296	
			-5	296	
			-6	296	
			-7	296	
			-8	296	
			-9	297	
	③	1,177	-1	294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94	
			-3	294	
			-4	295	
	④	4,328	-1	293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310	
			-3	310	
			-4	310	
			-5	310	
			-6	310	
			-7	310	
			-8	310	
			-9	310	
			-10	310	
			-11	310	
			-12	310	
			-13	310	
			-14	315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단독2	⑤	4,433	-1	291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320	
			-3	320	
			-4	320	
			-5	320	
			-6	320	
			-7	320	
			-8	320	
			-9	320	
			-10	320	
			-11	320	
			-12	320	
			-13	320	
			-14	302	
	⑥	4,269	-1	335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307	
			-3	306	
			-4	306	
			-5	306	
			-6	306	
			-7	306	
			-8	306	
			-9	306	
			-10	306	
			-11	306	
			-12	306	
			-13	306	
			-14	261	
	⑦	3,871	-1	284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82	
			-3	282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단독2	⑦		-4	282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5	282	
			-6	282	
			-7	282	
			-8	316	
			-9	316	
			-10	316	
			-11	316	
			-12	316	
			-13	315	
	⑧	4,048	-1	296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96	
			-3	296	
			-4	296	
			-5	296	
			-6	296	
			-7	292	
			-8	283	
			-9	283	
			-10	283	
			-11	283	
			-12	283	
			-13	283	
			-14	282	
	⑨	4,416	-1	319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319	
			-3	319	
			-4	319	
			-5	319	
			-6	319	
			-7	31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단독2	⑨		-8	268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9	319	
			-10	319	
			-11	319	
			-12	319	
			-13	319	
			-14	320	
	⑩	4,552	-1	320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320	
			-3	320	
			-4	320	
			-5	320	
			-6	320	
			-7	357	
			-8	358	
			-9	320	
			-10	320	
			-11	320	
			-12	319	
			-13	319	
			-14	319	
	⑪	3,109	-1	310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310	
			-3	310	
			-4	310	
			-5	315	
			-6	314	
			-7	310	
			-8	310	
			-9	310	
			-10	310	
	⑫	949	-1	31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317	
			-3	315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단독1	①	1,782	-1	298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96	
			-3	294	
			-4	297	
			-5	299	
			-6	298	
	②	1,063	-1	262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67	
			-3	267	
			-4	267	
	③	4,423	-1	256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74	
			-3	274	
			-4	274	
			-5	274	
			-6	274	
			-7	274	
			-8	263	
			-9	283	
			-10	284	
			-11	284	
			-12	284	
			-13	284	
			-14	284	
			-15	284	
			-16	273	
	④	4,833	-1	263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67	
			-3	267	
			-4	267	
			-5	267	
			-6	267	
			-7	26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단독1	④		-8	26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9	261	
			-10	266	
			-11	273	
			-12	273	
			-13	273	
			-14	273	
			-15	273	
			-16	273	
			-17	273	
			-18	263	
	⑤	2,759	-1	276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77	
			-3	277	
			-4	277	
			-5	277	
			-6	277	
			-7	277	
			-8	278	
			-9	278	
			-10	265	
	⑥	3,324	-1	269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80	
			-3	280	
			-4	280	
			-5	280	
			-6	275	
			-7	275	
			-8	280	
			-9	279	
			-10	279	
			-11	279	
			-12	268	
	⑦	3,324	-1	269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8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단독1	㉗		-3	280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4	280	
			-5	280	
			-6	275	
			-7	275	
			-8	280	
			-9	279	
			-10	279	
			-11	279	
			-12	268	
	㉘	4,158	-1	258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59	
			-3	258	
			-4	258	
			-5	258	
			-6	258	
			-7	258	
			-8	266	
			-9	268	
			-10	260	
			-11	260	
			-12	260	
			-13	260	
			-14	259	
			-15	259	
			-16	259	
	㉙	1,214	-1	30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97	
			-3	300	
			-4	310	
	㉚	1,879	-1	288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88	
			-3	285	
			-4	247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단독1	⑩		-5	25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6	257	
			-7	257	
	⑪	2,174	-1	266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65	
			-3	265	
			-4	259	
			-5	270	
			-6	283	
			-7	283	
			-8	283	
	⑫	2,762	-1	272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69	
			-3	269	
			-4	269	
			-5	268	
			-6	269	
			-7	286	
			-8	286	
			-9	286	
			-10	288	
	⑬	2,920	-1	23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46	
			-3	246	
			-4	246	
			-5	246	
			-6	239	
			-7	239	
			-8	246	
			-9	246	
			-10	24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단독1	㉓		-11	246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12	237	
	㉔	2,920	-1	23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46	
			-3	246	
			-4	246	
			-5	246	
			-6	239	
			-7	239	
			-8	246	
			-9	246	
			-10	246	
			-11	246	
			-12	237	
	㉕	2,932	-1	23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46	
			-3	246	
			-4	246	
			-5	246	
			-6	239	
			-7	241	
			-8	248	
			-9	248	
			-10	248	
			-11	248	
			-12	239	
	㉖	2,062	-1	279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75	
			-3	246	
			-4	248	
			-5	25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단독1	⑬		-6	252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7	254	
			-8	258	
단독2	①	2,988	-1	299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300	
			-3	296	
			-4	299	
			-5	298	
			-6	298	
			-7	299	
			-8	297	
			-9	295	
			-10	307	
	②	2,668	-1	298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97	
			-3	296	
			-4	296	
			-5	296	
			-6	296	
			-7	296	
			-8	296	
			-9	297	
	③	1,178	-1	295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94	
			-3	294	
			-4	295	
	④	2,379	-1	307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96	
			-3	296	
			-4	296	
			-5	29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④		-6	296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7	296	
			-8	296	
	⑤	4,201	-1	313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98	
			-3	298	
			-4	298	
			-5	299	
			-6	299	
			-7	299	
			-8	299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9	299	
			-10	299	
			-11	299	
			-12	299	
			-13	299	
			-14	303	
	⑥	4,144	-1	294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297	
			-3	297	
			-4	297	
			-5	297	
			-6	297	
			-7	297	
			-8	297	
			-9	297	
			-10	297	
			-11	297	
			-12	297	
			-13	297	
			-14	286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단독2	⑦	4,409	-1	320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319	
			-3	319	
			-4	319	
			-5	319	
			-6	319	
			-7	313	
			-8	265	
			-9	319	
			-10	319	
			-11	319	
			-12	319	
			-13	319	
			-14	321	
	⑧	4,535	-1	321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320	
			-3	320	
			-4	320	
			-5	320	
			-6	320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7	351	
			-8	345	
			-9	320	
			-10	320	
			-11	320	
			-12	319	
			-13	319	
			-14	320	
	⑨	3,111	-1	311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310	
			-3	31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단독2	⑨		-4	310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5	315	
			-6	314	
			-7	310	
			-8	310	
			-9	310	
			-10	311	
	⑩	951	-1	318	필지의 분할 불허. 2개 필지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합병 허용
			-2	317	
			-3	316	

2) 단독주택 용지(블록형)(변경)

☐ 기 정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BR1	-	10,113	-	10,113	개별필지로 지적분할하여 단독소유하거나 지적분할 없이 공유 가능

☐ 변 경

도면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	
BR1	-	10,106	-	10,106	개별필지로 지적분할하여 단독소유하거나 지적분할 없이 공유 가능

3) 공동주택 용지(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A1	-	25,090	A1	25,090	
A2	-	42,883	A2	42,883	
B1	-	39,285	A3	39,285	
B2	-	51,551	B1	51,551	
B3	-	65,692	B2	65,692	
C1	-	37,620	C1	37,620	
C2	-	47,457	C2	47,457	
T1	-	12,320	T1	12,320	
T2	-	10,132	T2	10,132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적(㎡)	
A1	-	36,608	A1	36,608	
A2	-	42,880	A2	42,880	
B1	-	39,214	A3	39,214	
B2	-	52,288	B1	52,288	
B3	-	67,286	B2	67,286	
C1	-	37,620	C1	37,620	
C2	-	47,459	C2	47,459	
T	-	22,452	T	22,452	

4)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근생1	①	1,049	- 1	1,049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②	3,139	- 1	60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 2	638	
			- 3	638	
			- 4	638	
			- 5	617	
	③	2,655	- 1	66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 2	640	
			- 3	654	
			- 4	693	
	④	734	- 1	36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 2	366	
	⑤	737	- 1	36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 2	369	
	⑥	2,657	- 1	584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 2	690	
			- 3	690	
			- 4	693	
	⑦	2,971	- 1	607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 2	627	
			- 3	573	
			- 4	629	
			- 5	535	
	⑧	1,519	- 1	721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 2	798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근생1	①	1,048	-1	1,04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620	
	②	3,150	-1	62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638	
			-3	638	
			-4	638	
			-5	616	
	③	2,650	-1	66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640	
			-3	655	
			-4	687	
	④	661	-1	29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366	
	⑤	664	-1	36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296	
	⑥	2,651	-1	584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690	
			-3	690	
			-4	687	
	⑦	2,985	-1	62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627	
			-3	573	
			-4	629	
			-5	536	
	⑧	1,544	-1	733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811	
근생2	①	2,024	-1	674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680	
			-3	670	
근생3	①	1,615	-1	772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843	

마. 준주거용지(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준주거1	①	8,491	-1	1,699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1,690	
			-3	846	
			-4	846	
			-5	846	
			-6	846	
			-7	846	
			-8	872	
	②	3,426	-1	85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857	
			-3	857	
			-4	857	
	③	3,987	-1	1,357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1,350	
			-3	1,280	
준주거2	①	5,417	-1	1,832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1,832	
			-3	1,753	
	②	2,223	-1	55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554	
			-3	558	
			-4	553	
	③	2,745	-1	466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468	
			-3	439	
			-4	439	
			-5	467	
			-6	466	
	④	2,842	-1	762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740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준주거2	④		-3	69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4	645	
	⑤	3,235	-1	80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809	
			-3	809	
			-4	809	
	⑥	3,150	-1	80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809	
			-3	783	
			-4	750	
준주거3	①	2,023	-1	989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1,034	
	②	2,166	-1	1,13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1,028	
	③	4,382	-1	1,087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1,096	
			-3	1,099	
			-4	1,100	
	④	4,124	-1	52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521	
			-3	517	
			-4	516	
			-5	520	
			-6	514	
			-7	511	
			-8	505	
	⑤	2,559	-1	623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656	
			-3	654	
			-4	626	
	⑥	2,458	-1	822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818	
			-3	818	
	⑦	1,827	-1	913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914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준주거1	①	8,496	-1	1,697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1,688	
			-3	846	
			-4	846	
			-5	846	
			-6	846	
			-7	846	
			-8	881	
	②	3,425	-1	854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857	
			-3	857	
			-4	857	
	③	3,995	-1	1,359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1,353	
			-3	1,283	
준주거2	①	5,416	-1	1,831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1,832	
			-3	1,753	
	②	2,222	-1	557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554	
			-3	558	
			-4	553	
	③	2,744	-1	46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468	
			-3	439	
			-4	439	
			-5	467	
			-6	466	
	④	2,820	-1	761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719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 적 (㎡)	획 지		비 고
			위치	면 적 (㎡)	
준주거2	④		-3	69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4	645	
	⑤	3,236	-1	809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809	
			-3	809	
			-4	809	
			-4	809	
	⑥	3,150	-1	80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809	
			-3	783	
			-4	750	
준주거3	①	2,006	-1	989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1,017	
	②	2,165	-1	1,137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1,028	
	③	4,380	-1	1,083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1,096	
			-3	1,099	
			-4	1,102	
	④	4,117	-1	516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521	
			-3	517	
			-4	518	
			-5	521	
			-6	514	
			-7	511	
			-8	499	
	⑤	2,559	-1	623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656	
			-3	654	
			-4	626	
	⑥	2,669	-1	893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888	
			-3	888	
	⑦	1,986	-1	992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994	

바.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1) 주차장(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10개소	20,658		20,658	
주1	-	2,115	만성동 1029-3전 일원	2,11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2	-	1,578	만성동 469-1대 일원	1,57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3	-	3,762	만성동 511-1대 일원	3,762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4	-	1,216	만성동 376-1답 일원	1,216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5	-	2,278	만성동 376-3답 일원	2,27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6	-	2,734	만성동 313답 일원	2,734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7	-	1,990	만성동 382전 일원	1,99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8	-	1,465	만성동 407답 일원	1,46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9	-	2,037	만성동 407답 일원	2,037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10	-	1,483	만성동 599전 일원	1,483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10개소	20,618		20,618	
주1	-	2,115	만성동 1029-3전 일원	2,11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2	-	1,578	만성동 469-1대 일원	1,57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3	-	3,752	만성동 511-1대 일원	3,752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4	-	1,215	만성동 376-1답 일원	1,21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5	-	2,260	만성동 376-3답 일원	2,26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6	-	2,734	만성동 313답 일원	2,734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7	-	1,991	만성동 382전 일원	1,991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8	-	1,453	만성동 407답 일원	1,453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9	-	2,037	만성동 407답 일원	2,037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10	-	1,483	만성동 599전 일원	1,483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광장(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6개소	11,859		11,859	
광29	-	7,187	팔복동 제2공단 입구	7,187	
광1	-	201	만성동 553-5답 일원	201	
광2	-	3,868	만성동 290대 일원	3,868	
광3	-	201	만성동 281-3답 일원	201	
광4	-	201	만성동 400-8전 일원	201	
광5	-	201	만성동 242답 일원	201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6개소	11,860		11,860	
광29	-	7,187	팔복동 제2공단 입구	7,187	
광1	-	201	만성동 553-5답 일원	201	
광2	-	3,869	만성동 290대 일원	3,869	
광3	-	201	만성동 281-3답 일원	201	
광4	-	201	만성동 400-8전 일원	201	
광5	-	201	만성동 242답 일원	201	

3) 공원(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9개소	146,883		146,883	
수	-	55,261	만성동 1063유 일원	55,261	
문	-	17,489	만성동 322답 일원	17,489	
근1	-	44,105	만성동 458답 일원	44,105	
근2	-	12,283	만성동 962전 일원	12,283	
어1	-	3,137	만성동 산148-5임 일원	3,137	
어2	-	2,500	만성동 575-2답 일원	2,500	
어3	-	2,092	만성동 267-19전 일원	2,092	
어4	-	8,502	만성동 220-2답 일원	8,502	
어5	-	1,514	만성동 335-8답 일원	1,514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9개소	164,308		164,308	
수	-	55,047	만성동 1063유 일원	55,047	
문	-	18,019	만성동 322답 일원	18,019	
근1	-	58,582	만성동 458답 일원	58,582	
근2	-	16,604	만성동 962전 일원	16,604	
어1	-	3,137	만성동 산148-5임 일원	3,137	
어2	-	2,631	만성동 575-2답 일원	2,631	
어3	-	1,879	만성동 267-19전 일원	1,879	
어4	-	6,895	만성동 220-2답 일원	6,895	
어5	-	1,514	만성동 335-8답 일원	1,514	

4) 녹지(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6개소	108,920		108,920	
완1	-	20,990	여의동 840-6대 일원	20,990	
완2	-	20,446	여의동 957답 일원	20,446	
완3	-	31,887	만성동 173-1답 일원	31,887	
완4	-	3,718	만성동 606답 일원	3,718	
완5	-	14,062	만성동 283답 일원	14,062	
연1	-	17,817	만성동 산105-2임 일원	17,817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7개소	104,536		104,536	
완1	-	21,661	여의동 840-6대 일원	21,661	
완2	-	24,162	여의동 957답 일원	24,162	
완3		16,493	만성동 173-1답 일원	16,493	
완4	-	3,739	만성동 606답 일원	3,739	
완5	-	14,103	만성동 283답 일원	14,103	
연1	-	12,833	만성동 산105-2임 일원	12,833	
연2	-	11,546	만성동 173-1답 일원	11,546	

5) 가스공급설비(변경없음)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2개소	10,964		10,964	
가1	-	8,315	만성동 329답 일원	8,31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가2	-	2,649	여의동 855-7전 일원	2,649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6) 방송·통신시설(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3개소	13,834		13,834	
방1	-	6,644	만성동 307-6대 일원	6,644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방2	-	159	만성동 산119-1임 일원	159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방3	-	7,031	만성동 289-1대 일원	7,031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3개소	14,007		14,007	
방1	-	6,735	만성동 307-6대 일원	6,735	필지의 분할 불허
방2	-	159	만성동 산119-1임 일원	159	필지의 분할 불허
방3	-	7,113	만성동 289-1대 일원	7,113	필지의 분할 불허

7) 교육시설(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5개소	38,091		38,091	
유1	-	2,115	만성동 453-1전 일원	2,11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유치원)
유2	-	2,238	만성동 249-3답 일원	2,23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유치원)
초1	-	11,548	만성동 588-4전 일원	11,54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초등학교)
초2	-	10,951	만성동 산119-1임 일원	10,951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초등학교)
중	-	11,239	만성동 962-1전 일원	11,239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중학교)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4개소	31,123		31,123	
유1	-	2,109	만성동 453-1전 일원	2,109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유치원)
유2	-	2,009	만성동 249-3답 일원	2,009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유치원)
초	-	13,000	만성동 산119-1임 일원	13,00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초등학교)
중	-	14,005	만성동 962-1전 일원	14,00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중학교)

8) 공공청사(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4개소	5,695		5,695	
공1	-	660	만성동 450답 일원	66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공2	-	911	만성동 482대 일원	911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공3	-	1,527	만성동 475-2전 일원	1,527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공4	-	2,597	만성동 238-3전 일원	2,597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3개소	4,358		4,358	
공1	-	694	만성동 450답 일원	694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공2	-	1,000	만성동 482대 일원	1,00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공3	-	2,664	만성동 238-3전 일원	2,664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9) 종교시설(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5개소	10,481		10,481	
종1	-	1,048	만성동 595전 일원	1,04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종2	-	786	만성동 488-1대 일원	786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종3	-	1,915	만성동 1134답 일원	1,91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종4	-	1,924	만성동 260-3답 일원	1,924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종5	-	4,808	여의동 377-2전 일원	4,80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5개소	8,412		8,412	
종1	-	1,036	만성동 595전 일원	1,036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종2	-	970	만성동 488-1대 일원	97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종3	-	1,915	만성동 1134답 일원	1,915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종4	-	1,924	만성동 260-3답 일원	1,924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종5	-	2,567	여의동 377-2전 일원	2,567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10) 의료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의	-	3,482	만성동 252답 일원	3,482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11) 주유소(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2개소	3,191		3,191	
주유1	-	1,148	만성동 193-5답 일원	1,148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유2	-	2,043	만성동 331답 일원	2,043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2개소	3,113		3,113	
주유1	-	1,070	만성동 193-5답 일원	1,07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주유2	-	2,043	만성동 331답 일원	2,043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12) 문화체육시설(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문	-	4,742	만성동 407답 일원	4,742	필지의 분할가능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문	-	4,767	만성동 452-1답 일원	4,767	필지의 분할가능

13) 오수중계펌프장(변경)

□ 기 정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2개소	824		824	
오1	-	724	만성동 1049-3답 일원	724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오2	-	100	여의동 855-20전 일원	10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 변 경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	획 지		비 고
			위 치	면 적(㎡)	
계	2개소	823		823	
오1	-	723	만성동 1049-3답 일원	723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오2	-	100	여의동 855-20전 일원	100	필지의 분할·합병 불허

2.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도 (S=1/3,000)

- 별첨 4

2.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 배치 · 형태 · 색채 · 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

가. 법조타운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법, 검	법, 검	용도	• <별표1> ‘법조타운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1> ‘법조타운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용적률	• <별표1> ‘법조타운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높이	• <별표1> ‘법조타운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축선 및 배치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물의 배치 -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법원 및 검찰청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 및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별표1> 법조타운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구 분		법조타운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J1 (검찰청)	J2 (법원)
	지정 용도	검찰청 및 그 부대시설	법원 및 그 부대시설
건폐율		60%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20% 이하(자연녹지지역)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제2종일반주거지역) 100% 이하(자연녹지지역)	230% 이하
높이	최고층수		-
	최저 층수	<u>가정</u>	<u>7층</u>
		<u>변경</u>	-
해당블록		검	법

나. 상업 · 업무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1~3, 업1~3	상1~3, 업1~3	용도	• <별표2> ‘상업 · 업무용지의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2> ‘상업 · 업무용지의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2> ‘상업 · 업무용지의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이	• <별표2> ‘상업 · 업무용지의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선 및 배치	• 건축선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물의 전면방향 - 다음에 해당하는 외벽면을 건축물의 전면으로 한다. 1. 둘 이상의 도로와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면한 외벽면 2. 건축지정선이 지정된 외벽면 - 20m 이상의 도로가 2개 이상 동시에 면하고 있는 대지의 경우 폭원이 큰 도로에 주전면을 면하도록 하되, 20m 이상 도로에 면한 기타 외벽면도 주전면에 준한 외관설계 권장한다.(가각이 있는 경우 가각 포함) <건축물의 전면방향 설정>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1층 바닥높이 - 건축물의 1층 바닥높이는 지형적 이유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대지내 공지 또는 보도와 15cm 이상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한다. • 건축물의 외관 - 전면도로에 면한 1층부 외벽면은 투시형으로 하며, 셔터를 설치할 경우에는 투시형으로 처리한다.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며,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1~3, 업1~3	상1~3, 업1~3	형태 및 외관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통신용 안테나, 태양광설비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 지붕·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되도록 조정시설을 조성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이외의 일체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 담장 - 원칙적으로 담장 설치는 불허한다.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20> ‘옥외광고물’, <별표21> ‘야간경관’의 기준을 따른다.

〈별표2〉 상업·업무용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C1 (간선변대형필지)	C2 (간선변 필지)
	권장 용도	기정 •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예식장	-
	변경	-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8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 숙박시설 • 공장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 <u>발전시설(폐지)</u> • 장례식장 • 자동차관련시설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8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 숙박시설 • 공장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 <u>발전시설(폐지)</u> • 장례식장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5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0층	10층
	최저층수	2층	2층
해당블록		상2 ④, 상3 ③	상1 ①②, 상2 ③, 상3 ①②

구 분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C3 (이면도로변)	C4(이면도로변)
	허용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8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 숙박시설 • 공장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 <u>발전시설(폐지)</u> • 장례식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9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8의 일반상업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 숙박시설 • 공장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 <u>발전시설(폐지)</u> • 장례식장
	건폐율	70% 이하	70% 이하
용적률		500% 이하	450% 이하
높이	최고층수	10층	7층
	최저층수	2층	2층
해당블록		상3 ④⑤	상1 ③④, 상2 ①②

구 분		상업·업무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C5	C6
	허용 용도	• 전층 - 업무시설(단,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이하인 것) • 1층이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단,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것)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 전층 - 업무시설(단, 너비 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이하인 것) • 1층이하 -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의 판매시설(단, 너비 12m 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미만인 것) - 불허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7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6의 준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 숙박시설 • 공장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 <u>발전시설(폐지)</u> • 장례식장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및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4의 제2종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외의 건축물 • 숙박시설 • 공장 • 교정 및 군사시설 중 다목의 군사시설 • <u>발전시설(폐지)</u> • 장례식장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180% 이하
높이	최고층수	5층	3층
	최저층수	2층	2층
해당블록		업1, 업2	업3

다. 첨단산업지원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1~2	산1~2	용도	• <별표3> ‘첨단산업지원용지의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3> ‘첨단산업지원용지의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용적률	• <별표3> ‘첨단산업지원용지의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높이	• <별표3> ‘첨단산업지원용지의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축선 및 배치	•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건물의 옥상 및 지붕위의 급수설비(물탱크), 굴뚝, 환기설비 및 시설(환기구 포함), 전기전화통신설비 등 이와 유사한 옥상 구조물이 전면도로의 건너편에서 보이지 않도록 설치하고 건축물의 형태를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방송 · 통신용 안테나 제외) - 에어컨의 실외기는 옥상 또는 가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별도의 설치공간을 마련하며 도시미관을 고려하여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 지붕 · 옥상층은 조형적 디자인이 되도록 하고 녹지공간으로 활용 되도록 조경시설을 조성하며,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필수적인 시설, 휴게 및 녹지공간, 태양광설비 이외의 일체의 타 용도로의 사용은 불허한다. • 담장 - 외곽도로에 담장은 가로의 연속성 및 경관의 통일성을 추구한다.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20> ‘옥외광고물’, <별표21> ‘야간경관’의 기준을 따른다.

〈별표3〉 첨단산업지원용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첨단산업지원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기정	F1 (소형필지)	F2 (중대형필지)
		변경	F	
	권장 용도		• 교육연구시설	• 교육연구시설
	허용 용도	기정	• 공장 ¹⁾ • 운수시설 • 창고시설(하역장 제외)	• 공장 ¹⁾ • 운수시설 • 업무시설(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하고, 바닥 면적의 합계가 3천㎡이하인 것) • 창고시설(하역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사술소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전시장 (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 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전라북도내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 에 한함) (단,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8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미만인 것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2호의 수련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4호의 업무시설 (단, 너비 12미터이상의 도로에 8미터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하인 것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¹⁾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하역장 제외)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과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10미터 이상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세차장에 한한다) • 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변경		
불허 용도		• 권장·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권장·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300% 이하	
높이	최고층수	5층	5층	
	최저층수	-	-	
해당블록		산1	산2	

1) 공장은 다음 각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동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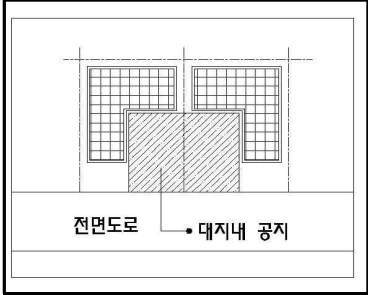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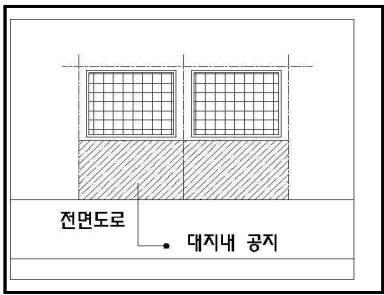
라.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동법시행령 “별표 8”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마.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바. 소음·진동규제법 제8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라. 주택건설용지(변경)

1) 단독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2, BR1	단독1~2, BR1	용도	• <별표4>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4>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4>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이	• <별표4>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1획지당 가구수	• <별표4>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블록형 단독주택	• <별표5> ‘블록형 단독주택의 규모, 세대수’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으며, 필지분할을 할 경우 분할된 필지의 세대수 합은 당초 블록단위 별 허용세대수를 초과할 수 없다.
		건축선 및 배치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가급적 2개 획지 단위로 옥외마당과 주차장이 한 곳에 모이도록 배치할 것을 권장한다. • 점포주택은 전면도로로부터 건축선 이상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단독주택 배치 예시> <점포형주택 배치 예시>   전면도로 • 대지내 공지 전면도로 • 대지내 공지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점포주택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투시형으로 한다. • 지붕 및 옥탑 - 점포주택에 근린생활시설이 설치될 경우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첩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지붕 형태 및 높이 1.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은 전체 지붕의 3/10 이내에서 허용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2, BR1	단독1~2, BR1	형태 및 외관	2. 지붕의 경사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한다. 3.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형식의 지붕으로 한다. 이때 지붕경사는 가로방향에 직교하도록 계획한다. 4.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지붕조성 예시> ● 담장, 대문 -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할 경우, 투시형 및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높이는 1.5m 이하로 권장한다. -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한다. - 점포주택은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 건축물의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 건축물의 색채 및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19> ‘색채계획’, <별표20>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 특히, 한스타일¹⁾ 적용 대상지(BR1)에 대해선 ‘공동주택 한옥디자인’ (2009. 1. 한국토지주택공사) 및 전주한옥마을 지구단위계획을 준용할 것을 권장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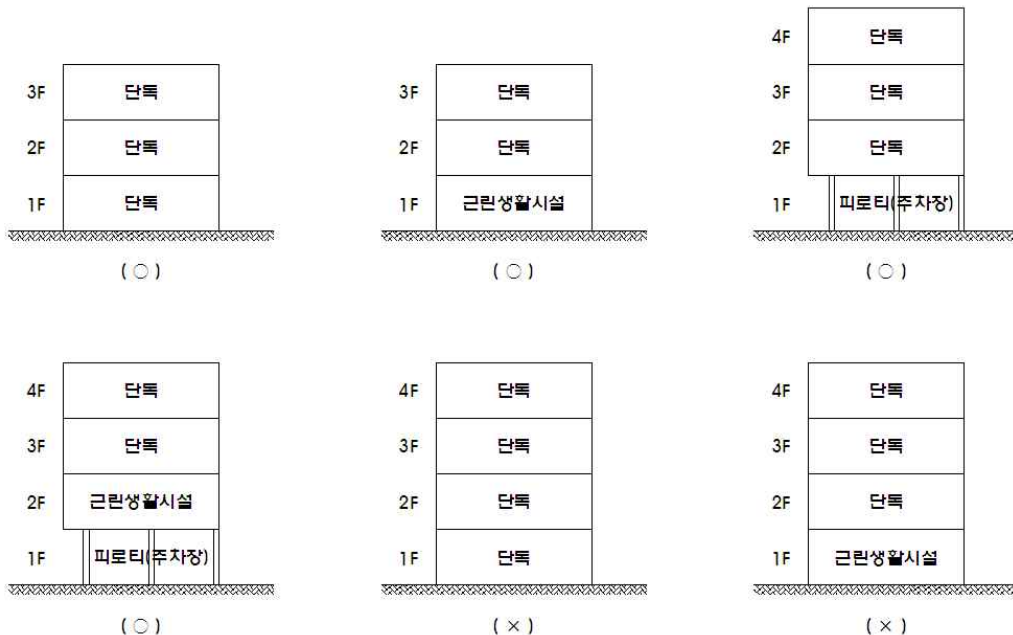
1) 한스타일은 전주한옥마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발간된 각종 연구자료,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된 한스타일 내용을 말한다.

〈별표4〉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e1 (필지형 단독주택용지)	Re1-1 (필지형 단독주택용지)	Re2 (필지형 단독주택용지)
	허용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 점포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u>발전시설(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을 건축물 옥상,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경우로 주변지역의 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함(신설))</u>	-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 점포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제2종근린생활시설 가목 중 기원, 다목, 자목 중 학원(해당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 미만인 것, 자동차 학원 및 무도학원 제외) <u>발전시설(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을 건축물 옥상,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경우로 주변지역의 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함(신설))</u>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관 제외)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 학교 보건법상 금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 학교 보건법상 금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 학교 보건법상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4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8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4층 (단 1층은 필로타구조로 주차장으로 활용시에만 4층 허용)	4층 (단 1층은 필로타구조로 주차장으로 활용시에만 4층 허용)	3층
호수		1획지당 1호이하 (다가구주택은 1호당 3세대 이하)	1획지당 1호이하 (다가구주택은 1호당 3세대 이하)	1획지당 1호이하 (다가구주택은 1호당 2세대 이하)
해당블록	기정	<u>단독2 (①⑥, ⑨⑫)</u>	<u>단독2 (⑦ ⑧)</u>	<u>단독1 (①②④⑤⑥)</u>
	변경	<u>단독2 (①⑤, ⑧⑩)</u>	<u>단독2 (⑥ ⑦)</u>	<u>단독1(①③④⑤)</u>

※ 점포주택의 조성은 1층이하 또는 2층(1층이 필로타구조일 경우)에만 위치할 수 있으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피로티 부분에 대한 타 용도로의 전환은 일체 불허한다.

※ Re1 및 Re1-1용지 필로티 설치시 층수 규정



구 분		단독주택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Re3 (필지형 단독주택용지)	Re4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허용용도	•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간 제외) • 점포주택*(제1종근린생활시설, 제2종근린생활시설 중 가목 내지 바목, 자목) • <u>발전시설(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을 건축물 옥상,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경우로 주변지역의 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함(신설)</u>	• 단독주택(다중주택, 공간 제외) • 단독형 집합주택 • 입주자 전용의 비영리 공동이용시설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4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00% 이하
최고층수		3층	3층
호수		1획지당 1호이하 (다가구주택은 1호당 3세대 이하)	1블록당 25호이하 (다가구주택은 1호당 2세대 이하)
해당블록	기정	<u>단독1 ③, ⑦~⑩</u>	BR1
	변경	<u>단독1 ②, ⑥~⑩</u>	

※ 점포주택의 조성은 1층이하 또는 2층(1층이 필로티구조일 경우)에만 위치할 수 있으며,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피로티 부분에 대한 타 용도로의 전환은 일체 불허한다.

〈별표5〉 블록형 단독주택의 규모, 세대수

구분	블록 번호	대지면적 (㎡)	블록내 최대 획지규모 (㎡)	수용호수	비 고
기정	BR1	10,113	660	25호 이하	
변경	BR1	10,106	660	25호 이하	

2)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2, B1~3 C1~2	A1~2, B1~3 C1~2	도면 표시	A1
		건축물 용도	- 공동주택 중 아파트 및 부대복리시설 발전시설(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를 건축물 옥상,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경우로 주변지역의 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함)(신설)
		허용 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불허 용도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기준을 따르며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한다.
		건폐율	〈별표6〉 ‘공동주택용지의 규모·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별표6〉 ‘공동주택용지의 규모·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별표6〉 ‘공동주택용지의 규모·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단, A2BL내 일부 지역은 교통방송국(TBN) 전파 영향을 고려하여 7층이하(GH 56m 이하)로 하며 범위는 결정도를 따른다.(신설)
		규모 및 세대수	〈별표6〉 ‘공동주택용지의 규모·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건축선 및 배치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한다. - 직각배치구간에 걸치는 건축물은 해당동은 다음 기준에 따라 배치한다. - 직각배치구간은 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수평단면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가.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거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pm 22.5^\circ$ 범위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나.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거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pm 22.5^\circ$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정방형(원형) 예시도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A1~2, B1~3 C1~2	A1~2, B1~3 C1~2	건축선 및 배치	• 소음 및 일조 등의 영향을 고려하여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이격거리 및 층고 조정을 반영한다. • 부대복리시설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내지 제55조’에 명기되어 있는 사항을 준수하여 설치한다. - 주민의 보행거리와 거주환경을 감안하여 결정도의 부대복리시설 위치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상가의 경우 회전식교차로 부분에는 전면부를 접하여 배치할 수 없다. - 단지내 유치원을 설치할 경우,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한하며 두 용도를 복합설치시 유치원을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 확보한다. 이때 지하층은 유치원 및 보육시설로 사용할 수 없으며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피로티 - 단지내 보행통로 및 단지내 보행로에 주동을 배치할 경우 통로부분은 ‘피로티 구조’를 설치한다.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있게 배치하고,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담장 - 담장은 설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담장의 재료와 형태를 통일시키도록 한다. - 담장의 형태는 투시형 담장으로써 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9> ‘색채계획’, <별표20> ‘옥외광고물’, <별표21> ‘야간경관’의 기준을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기정:</u> <u>T1~2</u> <u>변경:</u> <u>T</u>	<u>기정:</u> <u>T1~2</u> <u>변경:</u> <u>T</u>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A2
			허용 용도	-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u>발전시설(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를 건축물 옥상,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경우로 주변지역의 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함(신설)</u>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법’ 및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 기준을 따르며 학교보건법 등 기타 법령에 의해 당해 토지에 불허되는 용도는 제한한다.
		건폐율		〈별표6〉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별표6〉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별표6〉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규모 및 세대수		〈별표6〉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건축선 및 배치		- 건축한계선의 위치와 폭은 결정도를 따른다. - 건축한계선은 주거동에 한한다.
		형태 및 외관		- 지붕형태, 옥탑 등 천공부구조물에 관한 사항 -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의 지붕형태는 통일감 있게 배치하고, 옥상에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경사지붕 설치시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 담장 - 담장은 그 재료와 형태를 통일시키도록 한다. - 담장의 형태는 주택단지 외곽도로에 면한 담장은 투시형 담장으로써 단지 내부가 보일 수 있도록 하거나 생울타리로 하고, 높이는 1.5m 이하로 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 - 건축물의 색채, 옥외광고물, 야간경관에 관한 사항은 〈별표19〉 ‘색채계획’, 〈별표20〉 ‘옥외광고물’, 〈별표21〉 ‘야간경관’의 기준을 따른다.

〈별표6〉 공동주택용지의 규모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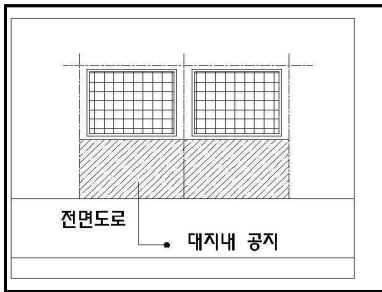
□ 기 정

구 분		용지면적 (㎡)	수용세대수 (호)	평균면적 (㎡)	최고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 고
블록 번호	주택 유형							
합 계		332,030	5,180	-	-	-	-	-
소 계		67,973	1,406	-	-	-	-	-
A1	60㎡ 이하	25,090	487	85	20층	50 이하	165이하	일반분양
A2		42,883	919	70	20층	50 이하	150이하	임대
소 계		187,658	2,911	-	-	-	-	-
B1	60 ~ 85㎡	39,285	626	101~114	20층	50 이하	175이하	일반분양
B2		51,551	820	110	20층	50 이하	175이하	임대
B3		65,692	1,045		20층	50 이하	175이하	일반분양
C1		18,810	308		20층	50 이하	180이하	일반분양
T1		12,320	112		4층	60 이하	100 이하	일반분양
소 계		76,399	863	-	-	-	-	-
C1	85㎡ 초과	18,810	226	150	20층	50 이하	180이하	일반분양
C2		47,457	569		20층	50 이하	180이하	일반분양
T2		10,132	68		4층	60 이하	100 이하	일반분양

□ 변 경

구 분		용지면적 (㎡)	수용세대수 (호)	평균면적 (㎡)	최고층수	건폐율 (%)	용적률 (%)	비 고
블록 번호	주택 유형							
합 계		345,807	5,497	-	-	-	-	-
소 계		79,488	1,607	-	-	-	-	-
A1	60㎡ 이하	36,608	711	85	20층	50 이하	165이하	일반분양
A2		42,880	896	79	20층	50 이하	165이하	임대
소 계		193,284	3,002	-	-	-	-	-
B1	60 ~ 85㎡	39,214	625	101~114	20층	50 이하	175이하	일반분양
B2		52,288	832	110	20층	50 이하	175이하	임대
B3		67,286	1,070		20층	50 이하	175이하	일반분양
C1		22,176	363		20층	50 이하	180이하	일반분양
T		12,320	112		4층	60 이하	100 이하	일반분양
소 계		73,035	888	-	-	-	-	-
C1	85㎡ 초과	15,444	200	139	20층	50 이하	180이하	일반분양
C2		47,459	615		20층	50 이하	180이하	일반분양
T		10,132	73		4층	60 이하	100 이하	일반분양

3) 근린생활시설용지(변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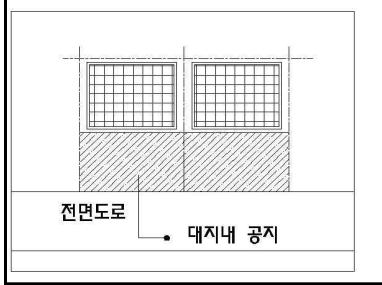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기정:</u> <u>근생1</u> <u>변경:</u> <u>근생1~3</u>	<u>기정:</u> <u>근생1</u> <u>변경:</u> <u>근생1~3</u>	용도	〈별표7〉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별표7〉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별표7〉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이	〈별표7〉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선 및 배치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 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근린생활시설 배치 예시>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지상1층 높이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4m이내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투시형으로 한다. - 지붕 및 옥탑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지붕 형태 및 높이 -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으로 건축시에는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지붕의 경사는 세로 : 가로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기정:</u> <u>근생1</u> <u>변경:</u> <u>근생1~3</u>	<u>기정:</u> <u>근생1</u> <u>변경:</u> <u>근생1~3</u>	형태 및 외관	3.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 하며, 박공형식의 지붕으로 한다. 이때 지붕경사는 가로방향에 직교하도록 계획한다. 4.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담장, 대문 -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 건축물의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 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0>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별표7〉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근린생활시설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SR1
	허용용도	• 제1종근린생활시설 • 제2종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u>발전시설(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를 건축물 옥상,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경우로 주변지역의 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함) (신설)</u>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 학교보건법상 금지시설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5층
최저층수		2층
해당블록	기정	근생1
	변경	근생1~3

마. 준주거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준주거 1~3	준주거 1~3	용도	• <별표8> ‘준주거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8> ‘준주거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8> ‘준주거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높이	• <별표8> ‘준주거용지 건축물 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할 수 없다.
		건축선 및 배치	• 건축한계선 및 건축지정선의 위치는 결정도를 따른다. • 전면도로로부터 일정간격 후퇴하여 건축하여 건축물 전면에 통일된 가로경관이 형성될 수 있도록 배치한다. <준주거용지 배치 예시>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 - 건축물 지상1층 높이는 주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4m이내로 계획할 것을 권장한다. - 건축물의 1층 전면부 외벽면은 투시형으로 한다. • 지붕 및 옥탑 - 옥상층의 부대시설(옥탑, 광고돌출물, 철탑 등) 높이는 4.5m를 초과할 수 없다. • 지붕 형태 및 높이 1. 건축물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평지붕으로 건축시에는 테라스 혹은 정원의 개념으로 조성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2. 지붕의 경사는 세로 : 가로의 비율이 1:1~1:3이 되도록 한다. 3. 난간높이의 경사지붕면을 평지붕외곽에 설치하는 것을 금지하며, 박공형식의 지붕으로 한다. 이때 지붕경사는 가로방향에 직교하도록 계획한다. 4. 계단실 등의 옥탑구조물 설치시 경사지붕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5. 물탱크 등 시설물이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한다. (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준주거 1~3	준주거 1~3	형태 및 외관	• 담장, 대문 - 담장 설치를 불허한다. • 건축물의 색채 및 옥외광고물 - 건축물 외벽의 재료 및 색상은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서로 조화를 이루어야 하고 주변 건물과도 조화를 유지하며, 동일 건축물에서 서로 다른 외벽재료를 사용할 경우 재료들 간의 조화를 고려한다.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0>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별표8〉 준주거용지 건축물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구 분		준주거용지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SR2(간선변 필지)	SR3(이면도로변 필지)
	허용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안마시술소 및 단란주점, 제조장, 게임제공업소, 종교집회장 제외) • 판매시설 중 상점(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이하인 것) • 업무시설(12m이상의 도로에 8m이상 접하고,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이하인 것) • 의료시설 중 병원(격리병원, 정신병원 및 요양소 제외) • 운동시설 • 교육연구시설 • <u>발전시설(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를 건축물 옥상,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경우로 주변지역의 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함) (신설)</u>	
	불허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 학교보건법상 금지 시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 학교보건법상 금지 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300% 이하	300% 이하
최고층수		5층	5층
최저층수		2층	-
해당블록		준주거1 ①, 준주거2 ④~⑥, 준주거3 ①②	준주거1 ②③, 준주거2 ①~③, 준주거3 ③~⑦

바.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1) 자동차 관련시설(주차장)(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기정:</u> 주1~11 <u>변경:</u> 주1~10	<u>기정:</u> 주1~11 <u>변경:</u> 주1~10	용도	• <별표9>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허용용도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9>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허용용도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9>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허용용도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9>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허용용도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건축선	• 건축한계선의 위치나 폭은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 · 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며,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주차장건축물 전면부의 상층부는 차폐시설을 설치한다. •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0>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 담장 -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5m 이하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별표9> 자동차관련시설(주차장) 허용용도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

구 분		자동차관련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P1	P2	P3	P4
	지정 용도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주차전용건축물 ¹⁾)			‘주차장법 제2조’에 의한 노외주차장 ²⁾
건폐율		90% 이하	90% 이하	90% 이하	20% 이하
용적률		450% 이하	630% 이하	270% 이하	40% 이하
최고층수		5층	7층	3층	2층
해당블록		주3,주7,주9,주10	주5	주1,주2,주6,주8	주4

1) 주차전용건축물은 주차장 외의 용도(부속용도 포함)로 사용할 수 없다.

2) 주4에는 주차전용건축물의 건축을 불허하며, 자전거주차장을 전체면적의 20%이상 확보하여야 함.(단, 주차관리소 등 주차장 부대시설은 건축 가능)

3) 자전거주차장 확보비율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관련규정에 따른다.

2)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1~2	주유1~2	용도	• <별표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 ‘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3의 V (건축물의 제한 등)’에 의한 용도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건폐율	• <별표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며,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관련법령에 따라 담장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별표10>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

구 분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가스공급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Z1	Z2
	지정용도	가스공급시설	주유소
건폐율		20%이하(가1), 30% 이하(가2)	20% 이하
용적률		40%이하(가1), 60% 이하(가2)	80% 이하
최고층수		2층(가1), 3층(가2)	4층
해당블록		가1~2	주유1, 주유2

3) 교육시설(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기정:</u> <u>유1~2,</u> <u>초1~2,</u> <u>중</u> <u>변경:</u> <u>유1~2,</u> <u>초,</u> <u>중</u>	<u>기정:</u> <u>유1~2,</u> <u>초1~2,</u> <u>중</u> <u>변경:</u> <u>유1~2,</u> <u>초,</u> <u>중</u>	용도	• <별표11> ‘교육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 유치원 용지의 허용용도는 유치원과 보육시설에 한하며, 이 경우 건축물 연면적의 70% 이상을 유치원으로 건축한다.
		건폐율	• <별표11> ‘교육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1> ‘교육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1> ‘교육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건축선 및 배치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나 폭은 결정도에 따른다. • 남향배치를 권장하며,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을 배치한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며,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담장 -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5m 이하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별표11> 교육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

구 분		교육시설용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S1	S2	S3
	지정용도	• 유치원 •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초등학교	•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중학교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80% 이하	180% 이하
최고층수		3층	5층	5층
해당블록	<u>기정</u>	유1~2	<u>초1~2</u>	중
	<u>변경</u>		<u>초</u>	

4) 근린공공시설(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기정:</u> <u>공1~4</u> <u>변경:</u> <u>공1~3</u>	<u>기정:</u> <u>공1~4</u> <u>변경:</u> <u>공1~3</u>	용도	• <별표12> ‘근린공공시설 허용용도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12> ‘근린공공시설 허용용도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용적률	• <별표12> ‘근린공공시설 허용용도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높이	• <별표12> ‘근린공공시설 허용용도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축선 및 배치	• 건축한계선의 위치나 폭은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며,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담장 -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별표12> 근린공공시설 허용용도 · 용적률 · 세대수 · 높이

구 분			근린공공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u>기정</u>	<u>W1</u>	<u>W2</u>	<u>W3</u>	<u>W4</u>
		<u>변경</u>	<u>W</u>			
	허용 용도		• 공공업무시설 •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바둑 • <u>발전시설(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를 건축물 옥상,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경우로 주변지역의 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함) (신설)</u>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최고층수		4층				
최저층수		2층				
해당 블록	<u>기정</u>	<u>공3</u>	<u>공2</u>	<u>공4</u>	<u>공1</u>	
	<u>변경</u>	<u>공1~공3</u>				

5) 문화체육시설(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문	문	용도	• <별표13> ‘문화체육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13> ‘문화체육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용적률	• <별표13> ‘문화체육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높이	• <별표13> ‘문화체육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축선 및 배치	• 건축한계선의 위치나 폭은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며,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담장 -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별표13> 문화체육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

구 분		문화체육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 표시	M2
	기 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허 용 용 도 변 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 <u>‘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 (단, 유아교육법 제7조에 의한 국립·공립 유치원에 한함)</u> <u>발전시설(신재생에너지설비(태양광)를 건축물 옥상, 벽면 등에 설치하는 경우로 주변지역의 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 한함) (신설)</u>
	불허 용도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5층
해당블록		문

6) 종교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종1~5	종1~5	용도	• <별표14> ‘종교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14> ‘종교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4> ‘종교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4> ‘종교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건축선	• 건축선(건축한계선)의 위치나 폭은 결정도에 따른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며,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담장 -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지붕 및 종탑 - 종교시설의 지붕은 경사지붕을 원칙으로 하며 지붕의 경사는 세로 : 가로 비율이 1 : 0.5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도록 한다. - 계단실, 물탱크실 등 옥탑구조물 설치시 가급적 지붕 안에 설치하여 밖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돌출되는 경우는 동일한 형태의 경사지붕을 설치한다.(단, 태양광설비는 제외) - 종탑의 높이는 해당 건축물의 최고층으로부터 5m이하로 조성한다. - 종탑에는 네온, 백열등 류의 설치를 금지하며 간접조명을 권장한다.

<별표14> 종교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

구 분		종교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D1	D2
	지정용도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250% 이하	150% 이하
최고층수		5층	3층
해당블록		종2	종1, 종3, 종4, 종5

7) 의료시설(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의	의	용도	• <별표15> ‘의료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15> ‘의료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5> ‘의료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5> ‘의료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형태 및 외관	- 건축물의 외관 - 건축물 외벽의 재료는 건물전면과 측·후면이 동일하거나 최소한 조화를 이루어 일관성을 지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적극 권장하며, 인접대지의 기존 건축물 또는 개발 예정 건축물로 인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부분은 제외한다. - 건축물의 옥외광고물 -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은 <별표20> ‘옥외광고물’의 기준을 따른다. - 담장 -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하되,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별표15> 의료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

구 분		의료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M1
	지정용도	의료시설 (정신병원 및 요양소, 격리병원은 제외)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
최고층수		7층 (<u>GH 60m 이하</u>) (<u>신설</u>)
해당블록		의

8) 방송·통신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방1~3	방1~3	용도	• <별표16>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 <별표16>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용적률	• <별표16>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높이	• <별표16>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을 초과하여 건축할 수 없다.
		형태 및 외관	- 담장 - 모든 건축물은 가급적 담장을 설치하지 않도록 권장한다. - 불가피하게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할 것과,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별표16〉 방송·통신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

구 분		방송·통신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B1	B2
	지정용도	방송·통신시설	방송·통신시설
건폐율		60% 이하	60% 이하
용적률		180% 이하	180% 이하
최고층수		5층	-
해당블록		방1, 방3	방2

9) 환경기초시설(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오1~2	오1~2	용도	〈별표17〉 ‘환경기초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건폐율	〈별표17〉 ‘환경기초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용적률	〈별표17〉 ‘환경기초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높이	〈별표17〉 ‘환경기초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에 규정된 내용에 의한다.
		형태 및 외관	- 담장 - 담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보행환경의 쾌적성 및 경관 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소재 및 형태로 설치할 것과, 1.5m 이하의 투시형 담장이나 생울타리 등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별표17〉 환경기초시설 허용용도·용적률·세대수·높이

구 분		환경기초시설
건축물 용도	도면표시	K1
	지정용도	오수중계펌프장
건폐율		20% 이하
용적률		40% 이하
최고층수		2층
해당블록		오1~2

3. 경 관 계 획

1) 공통사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기본원칙	- 본 계획은 건축물의 용도, 규모, 형태, 배치, 색채, 대지내 공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을 작성하여 시행, 운영된다. - 본 지침에 제시하지 않는 사항 및 상반되는 사항은 ‘전주 기본경관계획’을 따른다.
		경관계획의 시행내용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실현하고자 지구단위계획에서 상세히 규제되므로 그 내용의 준수에 따라 경관계획이 시행·운영된다.
		한스타일	전주한옥마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발간된 각종 연구자료,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된 한스타일 내용 준용한다.

2) 조망경관 형성계획(변경)

가. 스카이라인 경관 구상

- 대상지 북측 및 남측의 저층배치를 통해 혁신도시와 연계된 스카이라인 형성
- 건축물 단차구성을 통한 시각적 변화유도
- 영역별 다양한 층수규제를 통한 자연스러운 스카이라인 형성 유도

구 분	조망경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비 고
건축물 높이	구 분	최고층수	최저층수	용지별 건폐율, 용적률 적용
	단 독 주 택 용 지	3~4층	-	
	연 립 주 택 용 지	4층	-	
	공 동 주 택 용 지	20층	-	
	근 린 생 활 시 설 용 지	5층	-	
	준 주 거 용 지	5층	-	
	상 업 용 지 (간 선 변)	10층	2층	
	상 업 용 지 (이 면 부)	7층(C3블럭은 10층)	2층	
	법 조 타 운 용 지	-	기정 변경 7층 -	
	업무시설용지(간선변)	5층	2층	
	업무시설용지(이면부)	3층	2층	
	첨 단 산 업 지 원 용 지	5층	-	
	기 타 시 설 용 지	2~5층	-	
건축물 형태	• 용지별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계획 준수			별도규정
색채 계획	• <별표19>색채계획 내용 준수			별도규정
공원 · 녹지 조성	• 수변공원, 문화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조성(식재, 포장 등)			공원조성계획 별도추진

3) 축상경관 형성계획(변경없음)

가. 가로축상의 경관

- 건축선 지정으로 전면공지를 확보하여 도로변의 개방감 증진
- 가로변의 건축물을 정비하여 가로시설물의 인지성과 보행로와 자전거도로의 분리로 보행자에 대한 안전성 제고
- 공동주택의 외벽의 디자인, 녹지공간의 확보 등 가로변의 오픈스페이스 조성

나. 녹지축상의 경관

- 근린공원 및 수변공원에 대한 접근성을 위하여 보행자전용도로를 연계하여 주변지역으로부터의 접근이 용이토록 조성
-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 학교시설 등의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행과 자전거의 이용을 유도

다. 월드컵로 경관

- 월드컵로에 인접한 건축물 규제를 통한 가로경관 확보
- 월드컵로에서의 황방산 조망권 확보를 위한 공동주택지 층고제한 계획 수립
- 월드컵로에서 법조타운 조망권 확보를 위해 준주거지역 최고층수 규제 및 법조타운 최저층수 규제

구 분	축상경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비 고
건축물 높이	구 분	최고층수	최저층수	
	중로1-1호선변(준주거용지)	5층	2층	
	중로1-3호선변(업무시설용지)	5층	2층	
	중로1-3호선변(법조타운)	-	-	
	중로1-2, 1-6호선변(공동주택)	20층	-	
	대로3-2호선변(업무시설용지)	5층	2층	
	중로1-4호선변(근린생활시설용지)	5층	2층	
	월드컵로변(첨단산업지원용지)	5층	-	
건축물 배치	• 건축지정선 - 보조간선도로변 : 3m • 건축한계선 - 집산 · 국지도로변 : 상업지역 2~5m, 주거지역 2m - 공동주택용지 : 8m			
건축물 형태	• 용지별 건축물 형태 및 외관계획 준수			별도규정
색채계획	• <별표19>색채계획 내용 준수			별도규정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내 조경시설 이외의 시설 · 물건적치 · 주차행위 등 금지(일정간격 조경시설 설치) • 전면공지와 공개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일치(부득이한 경우 경사로 설치) • 보조간선도로변 시야확보 및 개방감 확보 • 보조간선도로변 주변과 조화된 포장			

구 분	축상경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비 고
대문·담장	• 용지별 대문·담장계획 준수	별도규정
간판	• 간판수량 제한 • 가로형간판 및 돌출형간판의 위치, 크기, 지면간격 등을 제한 • 창문이용광고물 및 지주형간판 제한	별도규정
도로시설	• 셸터(Shelter)형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계획	
가로식재 및 포장	• 가로조명과 안내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식재 • 식별성이 뛰어난 유색포장재료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의 경사로구조, 점자블럭 설치	
안내 표지판	• 다양한 형태의 볼라드 설치 • 가로등과 사인시스템의 통합안내체계를 제시 • 벤치, 파고라, 셸터, 가로판매대 계획	
공원·녹지 조성	• 수변공원, 문화공원,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식재, 포장 등)	

4) 거점경관 형성계획(변경)

■ 법조타운 경관

- 지구의 중심이 되는 법조타운을 거점으로 설정하여 중심성 제고
- 법조타운을 중심으로 수변공원과 근린공원을 연계한 Green Network 구축
- 인접한 업무시설의 층수규제를 통한 법조타운의 중심성 강화

구 분	거점경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비 고
건축물 높이	구 분		최고층수		용지별 건폐율, 용적률 적용
	법 조 타 운 용 지		-	기정	
				7층	
	업 무 시 설 용 지		3층	-	
			2층		
건축물 형태	• 주변의 자연경관 등 중요한 경관요소에 대한 시각적 통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건축물 배치				
외관계획	• 법원 및 검찰청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주변 환경 및 건축물 등과 조화를 이루도록 한다				
공원·녹지 조성	• 법조타운 인근에 특성화된 근린공원 조성 • 법원·검찰청 부지내에 공공조경 설치				

5) ZONE경관 형성계획(변경없음)

가. 주거 ZONE 경관계획

- 주택지 경관은 쾌적하고 아늑한 분위기의 경관 형성
-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의 단지별 조성으로 각 단지의 근린주구를 형성하여 동질성 제고
- 높은 건축물(공동주택 20층)과 낮은 건축물(단독주택 4층)을 근린생활시설(5층)의 중계로 자연스런 스카이라인 형성
- 보행자전용도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과 연계한 공공조경 지정으로 통경축 확보

구 분	주택지경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비 고
건축물 높이	구 분	최고층수	최저층수	
	단 독 주 택 용 지	4층	-	
	연 립 주 택 용 지	4층	-	
	공 동 주 택 용 지	20층	-	
	근 림 생 활 시 설 용 지	5층	2층	
건축물 배치	• 건축지정선 - 상업시설용지 : 3m • 건축한계선 - 상업시설용지 : 2m - 공동주택용지 : 8m - 단독주택용지 : 2m			
건축물 형태	• 별도규정을 통한 용지별 계획수립			별도규정
색채계획	• <별표19>색채계획 내용 준수			별도규정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내 조경시설 이외의 시설·물건적치·주차행위 등 금지 • 전면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일치(부득이한 경우 경사로 설치)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한함
대문·담장	• 단독주택 - 담장 설치할 경우 1.5m이하 투시형 및 생울타리 권장 - 재료 색깔 및 장식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되도록 설치 - 점포주택 : 담장설치 불허 • 공동주택 - 원칙상 설치금지, 부득이한 경우 재료와 형태 통일 - 외곽도로변 담장 : 1.5m이하의 투시형 또는 생울타리 - 보행자전용도로, 공원변 담장 : 1m이하 생울타리 • 근린생활시설 - 담장설치 불허			
간판	• 간판수량 제한 • 가로형간판 및 돌출형간판의 위치, 크기, 지면간격 등을 제한 • 창문이용광고물 및 지주형간판 제한			별도규정
공원·녹지 조성	• 어린이공원 조성			공원조성계획 별도수립

나. 상업 ZONE 경관계획

- 용도지역에 알맞은 적절한 건축물의 용도를 제시하여 지역상권의 활성화 유도
- 간선부에 건축지정선(3m)지정으로 전면공지의 확보 및 정연화된 가로경관으로 시가지화의 이미지 형성
-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제한

구 분	상업지경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비 고
건축물 높이	구 분	최고층수	최저층수	
	준 주 거 용 지 (간 선 변)	5층	2층	
	준 주 거 용 지 (이 면 부)	5층	-	
	상 업 용 지 (간 선 변)	10층	2층	
	상 업 용 지 (이 면 부)	7~10층	2층	
	업 무 시 설 용 지	5층	2층	
건축물 배치	• 간선변 : 건축지정선 3m • 이면부 : 건축한계선 2m			
건축물 형태	• 별도규정을 통한 용지별 계획수립			별도규정
색채계획	• <별표19>색채계획 내용 준수 • 법조타운용지는 법원 및 검찰청의 고유특성을 고려하여 자율적 색채계획 수립 가능			별도규정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내 조경시설 이외의 시설·물건적치·주차행위 등 금지(일정간격 조경시설 설치) • 전면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일치(부득이한 경우 경사로 설치) • 간선변 시야확보 및 개방감 확보, 생육이 강한 수종 식재 • 간선변 주변과 조화된 포장			근린생활시설 용지에 한함
대문·담장	• 담장설치 불허			
간판	• 간판수량 제한 • 가로형간판 및 돌출형간판의 위치, 크기, 지면간격 등을 제한 • 창문이용광고물 및 지주형간판 제한			별도규정
도로 시설	• 쉼터형 버스정류장, 자전거도로 계획			
가로식재 및 포장	• 가로조명과 안내판, 가로장치물 등이 차폐되지 않도록 식재 • 식별성이 뛰어난 유색포장재료 • 장애인 및 노약자를 위한 횡단보도의 경사로구조, 점자블록 설치			
안내 표지판	• 가로등 및 사인시스템의 통합안내체계를 제시 • 벤치, 파고라, 쉼터계획			

다. 첨단산업지원 ZONE 경관계획

- 용도지역에 알맞은 적절한 건축물의 용도를 제시하여 산업단지와 연계한 첨단산업지원용지 이미지 제공
-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로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내에서 건축물의 형태 및 색채 제한

구 분	첨단산업지원용지경관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비 고
건축물 높이	• 최고층수 : 5층	
건축물 배치	• 이면부 : 건축한계선 2~3m	
건축물 형태	• 별도규정을 통한 계획수립	별도규정
색채계획	• <별표19>색채계획 내용 준수	별도규정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내 조경시설 이외의 시설·물건적치·주차행위 등 금지(일정간격 조경시설 설치) • 전면공지의 바닥은 보도와 일치(부득이한 경우 경사로 설치)	
대문·담장	• 외곽도로에 담장은 가로의 연속성 및 경관의 통일성을 추구	
공원·녹지 조성	• 중심부에 문화공원 배치 및 가스저장소 주변에 완충녹지를 배치하여 쾌적한 경관 유도	

4. 저탄소녹색도시 조성계획

1)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적용요소

가. 교통계획 적용요소(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주차장	- 주차장의 투수성 포장 등을 도입하여 환경친화적인 주차장 조성 권장 - 법정 주차장 면적보다 초과 확보하여 보행을 유도함								
	구분	부지면적 (㎡)	법정대수 (대)	계획면적 (㎡)	부지면적 대비	주차단위면적 (㎡) ¹⁾	설치가능 주차대수(대)	법정대수 대비	비고
	기정	1,434,193	15,138	20,658	1.40%	21.4	19,227	129.2%	
	변경	1,434,193	15,138	20,618	1.40%	21.4	19,227	129.2%	
주1) : 주차 단위면적 = 주차구획(2.3m×5.0m=11.5㎡)+통로((6.0m/2)×2.3m=6.9㎡)+여윍폭(3.0㎡)=21.4㎡									
교통정온화 (Traffic Calming) 기법 적용	- 보행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온실가스 배출을 저감할 수 있도록 계획 - 차량속도를 제한하기 위하여 험프형 횡단보도 활용(35개소) - 초등학교 및 유치원, 어린이공원 주변 가드펜스 설치(L=3,896m) - 공동주택 진출입구 부분에 Roundabout을 설치하여 주민안전 도모								
대중교통 및 보행	- 대중교통 및 보행교통의 편의증진을 위한 계획수립으로 대중교통 중심의 개발을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조성 - 버스 정류장계획 - 버스정류장 신설 : 30개소(정차대수 1대) - 설계속도 40km/h : 24개소(B=3.0m, L=40m) - 설계속도 60km/h : 6개소(B=3.0m, L=60m) - 버스정류장 이전 : 1개소(B=3.0m, L=60m) - barrier free적용(차도와 단차 15cm이하) - 보행동선의 연속성을 위한 횡단보도 설치 - 보행횡단보도 : 154개소 (가로 38개소, 교차로 113개소, 험프형 횡단보도 35개소 포함) - barrier free 적용 -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 기정 : - B=10m L=993m, B=6m, L=523m - 변경 : - B=15m L=35m, B=10m L=1,173m, B=6m, L=455m -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저탄소 녹색도시 실현 -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고 출퇴근, 통학, 여가 등 자전거이용 목적에 따른 통행을 고려한 노선체계 선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모 - 도로구배에 맞는 자전거도로 노선계획(3%이하) - 연속적인 보행 및 자전거도로 환경조성								

구 분	계 획 내 용
자전거도로	• 자전거도로 계획 - 20m이상 도로에 자전거도로 설치(B=1.5 ~ 2.0m, L=13,775m) • 자전거 보관소 설치 - 노외주차장 포함 23개소 - 노외주차장면적의 5%이상 확보 • 교차로부 자전거 횡단로, 자전거 신호등 설치

나. 공원·녹지계획 적용요소(변경)

구 분	계 획 내 용
공원·녹지 계획	• 공원·친수공간 확대를 통한 탄소흡수요소 조성과 대기질 개선으로 생태기반 녹색성장 도시 기반 마련 • 기정 : 기지제 및 조촌천으로 유입하는 자연형수로 계획과 수로를 중심으로 기지제와 황방산을 연결하는 Green network 구축 • 변경 : 근린공원 계획으로 기지제와 황방산을 연결하는 Green network 구축 • 기존 자연지형의 보존 및 조화와 주변 개발예정지와의 연계 등을 통한 공원·녹지체계를 형성하며, 공원의 규모와 주변여건을 고려한 기능을 설정하여 조성
자연형 저류지 설치	• 수변공원내 생태습지를 통한 자연형 저류지 설치 • 자연형 저류지내 생물서식공간을 확보하고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습지조성 권장 • 습지는 수질의 정화를 위해 다단계로 조성할 것을 권장
투수성 수로 조성	• 완충녹지 내에 조성된 산책로의 측면은 배수로의 기능을 포함하도록 투수성 수로 조성 권장

2) 용지별 저탄소녹색도시 조성을 위한 계획요소 적용방안

가. 공통사항(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공통	기본원칙	•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은 ‘전주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를 따르는 것을 적극 권장 • 수자원확보와 지역내 물순환시스템을 위하여 우수, 집수, 저류기법 권장 • 에너지 저소비형 도시로 건설하기 위하여 자원순환시스템 구축 • 건축물의 옥상, 벽면, 테라스 등은 가능한 녹화 권장 • 지구내 녹지의 확대를 위해 쌈지공원 조성을 권장 • 신·재생에너지 -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8-3호 ‘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에 의한 설치의무기관은 총건축공사비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 설비에 사용 - 자연에너지를 최대한 활용하여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한 도시환경의 구축을 지향 - 사업지구내에 건축되는 건축물(단독주택, 공동주택, 공공시설, 상업시설, 학교 등)에는 신·재생에너지(태양광설비)의 적용을 적극 권장(단, 주변 지역의 경관 및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설치)

나. 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기정:</u> <u>A1~2,</u> <u>B1~3,</u> <u>C1~2,</u> <u>T1~2,</u> <u>단독1~2,</u> <u>블록형</u> <u>단독1</u> <u>변경:</u> <u>A1~2,</u> <u>B1~3,</u> <u>C1~2,</u> <u>T,</u> <u>단독1~2,</u> <u>블록형</u> <u>단독1</u>	<u>기정:</u> <u>A1~2,</u> <u>B1~3,</u> <u>C1~2,</u> <u>T1~2,</u> <u>단독1~2,</u> <u>블록형</u> <u>단독1</u> <u>변경:</u> <u>A1~2,</u> <u>B1~3,</u> <u>C1~2,</u> <u>T,</u> <u>단독1~2,</u> <u>블록형</u> <u>단독1</u>	생태면적률 적용	• 단독주택 · 공동주택용지내 생태면적률 적용사항 $\text{생태면적률} = \frac{\text{자연순환 기능면적}}{\text{전체 대상지 면적}} = \frac{\sum(\text{공간유형별면적} \times \text{가중치})}{\text{전체 대상지 면적}} \times 100\%$ • 단독주택용지는 생태면적률 40%이상으로 조성하는 것을 권장 • 공동주택 중 중저밀, 중밀 아파트단지는 생태면적률 30%이상을 조성하는 것을 권장 <생태면적률 공간유형 구분 및 가중치> <table><tr><th>공간유형</th><th>가중치</th><th>설 명</th><th>사 례</th></tr><tr><td>1 </td><td>1.0</td><td>-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td><td>-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td></tr><tr><td>2 </td><td>1.0</td><td>-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td><td>-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td></tr><tr><td>3 </td><td>0.7</td><td>-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td><td>-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td></tr><tr><td>4 </td><td>0.7</td><td>- 토심이 90cm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td><td>-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td></tr><tr><td>5 </td><td>0.6</td><td>- 토심이 20cm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td><td>-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중앙형 녹화옥상시스템</td></tr><tr><td>6 </td><td>0.5</td><td>- 토심이 90cm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td><td>-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td></tr><tr><td>7 </td><td>0.5</td><td>- 토심이 20cm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td><td>-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td></tr><tr><td>8 </td><td>0.5</td><td>-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td><td>- 잔디블록, 식생블록 등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td></tr><tr><td>9 </td><td>0.4</td><td>-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미터 높이까지만 산정</td><td>-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td></tr><tr><td>10 </td><td>0.3</td><td>-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td><td>-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등</td></tr><tr><td>11 </td><td>0.2</td><td>-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td><td>-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 사그석 틈새포장 등</td></tr><tr><td>12 </td><td>0.2</td><td>-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td><td>-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td></tr><tr><td>13 </td><td>0.0</td><td>-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td><td>-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td></tr></table>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1.0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2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3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4 	0.7	- 토심이 90cm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5 	0.6	- 토심이 20cm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중앙형 녹화옥상시스템	6 	0.5	- 토심이 90cm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7 	0.5	- 토심이 20cm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8 	0.5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잔디블록, 식생블록 등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9 	0.4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미터 높이까지만 산정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10 	0.3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등	11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 사그석 틈새포장 등	12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13 	0.0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공간유형	가중치	설 명	사 례																																																						
1 	1.0	- 자연지반이 손상되지 않은 녹지 - 식물상과 동물상의 발생 잠재력 내재 온전한 토양 및 지하수 함양 기능	- 자연지반에 자생한 녹지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는 절성토 지반에 조성된 녹지																																																								
2 	1.0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수공간	- 하천, 연못, 호수 등 자연상태의 수공간 - 지하수 함양 기능을 가지는 인공연못																																																								
3 	0.7	- 지하수 함양 기능이 없는 수공간	- 자연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 인공지반 위 차수 처리된 수공간																																																								
4 	0.7	- 토심이 90cm 이상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5 	0.6	- 토심이 20cm 이상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혼합형 녹화옥상시스템 - 중앙형 녹화옥상시스템																																																								
6 	0.5	- 토심이 90cm 미만인 인공지반 상부 녹지	- 지하주차장 상부 녹지, - 지하구조물 상부 녹지																																																								
7 	0.5	- 토심이 20cm 미만인 녹화옥상시스템이 적용된 공간	- 저관리 경량형 녹화옥상시스템																																																								
8 	0.5	- 자연지반과 연속성을 가지며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50% 이상 식재면적	- 잔디블록, 식생블록 등 - 녹지 위에 목판 또는 판석으로 표면 일부만 포장한 경우																																																								
9 	0.4	- 벽면이나 옹벽(담장)의 녹화, 등반형의 경우 최대 10미터 높이까지만 산정	- 벽면이나 옹벽녹화 공간 - 녹화벽면시스템을 적용한 공간																																																								
10 	0.3	-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전면투수 포장면, 식물생장 불가능	- 자연지반위에 시공된 마사토, 자갈, 모래포장 등																																																								
11 	0.2	- 포장재의 틈새를 통해 공기와 물이 투과되는 포장면	- 틈새를 시공한 바닥 포장 - 사그석 틈새포장 등																																																								
12 	0.2	- 지하수 함양을 위한 우수침투시설 또는 저류시설과 연계된 포장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옥상면 - 침투, 저류시설과 연계된 도로면																																																								
13 	0.0	- 공기와 물이 투과되지 않는 포장, 식물생장이 없음	- 인터락킹 블록, 콘크리트, 아스팔트 포장, - 불투수 기반에 시공된 투수 포장																																																								
	우수 집수 시스템 도입	• 공동주택의 경우, 지붕우수집수시설과 지하주차장 빗물저류조를 통해 우수를 집수하는 시스템 도입 권장 • 강우시 우수를 저장하여 평시에 수자원으로 전환, 재활용하는 우수 활용시설 설치 권장																																																									

다. 첨단산업지원 · 근린생활시설 · 상업 · 업무 · 준주거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기정:</u> <u>산1~2</u> <u>근생1</u> <u>상1~3</u> <u>업1~3</u> <u>준주거</u> <u>1~3</u> <u>변경:</u> <u>산1~2</u> <u>근생1~3</u> <u>상1~3</u> <u>업1~3</u> <u>준주거</u> <u>1~3</u>	<u>기정:</u> <u>산1~2</u> <u>근생1</u> <u>상1~3</u> <u>업1~3</u> <u>준주거</u> <u>1~3</u> <u>변경:</u> <u>산1~2</u> <u>근생1~3</u> <u>상1~3</u> <u>업1~3</u> <u>준주거</u> <u>1~3</u>	우수 집수 시스템 도입 옥상녹화 시스템 도입	- 건축물의 옥상에 우수 집수 시스템 도입 권장 - 집수된 우수가 인접하는 수로 및 지면 침투시설에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권장 - 평지붕의 경우 하중 부담이 적은 경량형 옥상녹화시스템을 도입하여 지피식물 및 야생초화류 식재 권장 <옥상녹화 예시도>

라. 공공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기정:</u> <u>공1~4</u> <u>문,</u> <u>초1~2</u> <u>중1</u> <u>유1~2</u> <u>방1~3</u> <u>중1~5</u> <u>변경:</u> <u>공1~3</u> <u>문,</u> <u>초,중</u> <u>유1~2</u> <u>방1~3</u> <u>중1~5</u>	<u>기정:</u> <u>공1~4</u> <u>문,</u> <u>초1~2</u> <u>중1</u> <u>유1~2</u> <u>방1~3</u> <u>중1~5</u> <u>변경:</u> <u>공1~3</u> <u>문,</u> <u>초,중</u> <u>유1~2</u> <u>방1~3</u> <u>중1~5</u>	벽면녹화 우수 집수 시스템 도입	-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등의 공공 건축물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전체 벽면길이의 25퍼센트 이상 벽면녹화 권장 - 교육시설, 문화체육시설, 공공청사 등의 공공 건축물 옥상에 우수 집수 시스템 도입 권장 - 집수된 우수가 인접하는 수로 및 지면 침투시설에 연결될 수 있는 시스템 도입 권장

5.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가. 법조타운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법, 검	법, 검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18>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공공조경 -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별표18>의 ‘공공조경’ 규정에 따르며, 완충녹지 또는 공원 등과 연계하여 조성한다. - 가각부의 공공조경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과 전주시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진출입로와 인접한 공공조경 위치에는 관리사무실, 경비실 등의 부대시설 건축은 가능하다.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검찰청 및 법원 후문(중로1-3호선변)은 비상시를 제외하고 보행자만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주차장에 관한 사항은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 심의 내용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할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나. 상업 · 업무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상1~3, 업1~3	상1~3, 업1~3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18>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저감대책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등을 계획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며, 가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한다.

다. 첨단산업지원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산1~2	산1~2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18>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저감대책 심의의견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공간은 가급적 지하로 하고, 옥외주차장은 건축물 후면 및 측면에 배치한다. - 옥외주차장은 적절한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등을 계획하여 휴게공간으로 활용하며, 가각부 및 측면 경계부 처리시 수목을 활용한다.

라. 주택건설용지

1) 단독주택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단독1~2, BR1	단독1~2, BR1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18>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대지내 조경 - 점포주택은 건축물 측면에 설치하고 단독주택은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필지에 접한 도로중 위계가 가장 낮은 도로 또는 가구의 장변구간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도로의 가각구간에는 설치할 수 없다. - 주차장 설치기준 - 주거용도의 건축물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가구당 1대 이상’ 과 ‘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하여 확보하여야 하는 대수’ 중 많은 것 이상 설치한다. - 점포주택에 대한 주차대수 설치기준은 위의 규정에 의한 설치대수에 ‘주차장법’ 및 ‘전주시 주차장조례’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의 연면적에 따라 확보하여야 하는 주차대수 이상을 설치한다.

2) 공동주택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기정:</u> <u>A1~2,</u> <u>B1~3,</u> <u>C1~2,</u> <u>T1~2</u> <u>변경:</u> <u>A1~2,</u> <u>B1~3,</u> <u>C1~2,</u> <u>T</u>	<u>기정:</u> <u>A1~2,</u> <u>B1~3,</u> <u>C1~2,</u> <u>T1~2</u> <u>변경:</u> <u>A1~2,</u> <u>B1~3,</u> <u>C1~2,</u> <u>T</u>	대지내 공지	• 공공조경 - 1획지당 1개소에 한하여 공공조경부지내 부대복리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위치에는 <별표18>의 ‘공공조경’ 규정에 따르며, 완충녹지 또는 공원 등과 연계하여 조성한다. - 가각부의 공공조경은 ‘건축법시행령 제113조’ 규정과 전주시의 건축조례의 공개공지 지침’을 준용하여 파고라, 벤치, 조명등, 플랜터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 단지내 조경 - 각 단지의 조경면적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주택유형별 대지면적에 대한 조경면적 비율 이상으로 확보한다. 1. 전용면적 60㎡ 이하 부분 : 30% 2. 전용면적 60 ~ 85㎡ 부분 : 40% 이상 3. 전용면적 85㎡ 초과 부분 : 50% 이상 - 단지내 녹지는 인근의 녹지와 연계되도록 한다. - 동일한 단지내 2개소 이상의 어린이놀이터를 설치할 경우 놀이시설의 종류와 형태는 서로 다르게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 녹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식재할 것을 권장한다. 1. 단지 외곽도로 경계부 녹지 : 수관이 크고 기엽이 밀실한 교목과 하부식생을 조성하여 차폐식재를 한다. 2. 아파트 건물 주변 녹지 : 지면을 피복하는 수목을 식재하고, 계절에 따라 꽃이나 단풍 등으로 계절의 특성을 나타내는 관목류를 중심으로 하되, 부분적으로 독립수로서 교목류를 식재한다. 3. 주차장 주변 녹지 : 수엽이 치밀하고, 아래가지가 잘 자라지 않는 낙엽수로 식재한다. - 단지내 녹지에 식재되는 수목의 수종 및 수고, 수폭, 근원직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 심의시 검토 받아 계획적 식재를 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기정:</u> <u>A1~2,</u> <u>B1~3,</u> <u>C1~2,</u> <u>T1~2</u> <u>변경:</u> <u>A1~2,</u> <u>B1~3,</u> <u>C1~2,</u> <u>T</u>	<u>기정:</u> <u>A1~2,</u> <u>B1~3,</u> <u>C1~2,</u> <u>T1~2</u> <u>변경:</u> <u>A1~2,</u> <u>B1~3,</u> <u>C1~2,</u> <u>T</u>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차량진출입구가 지정된 대지는 지정된 구간내에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지정된 출입구의 위치에 대한 변경 신청이 있는 경우 승인권자(또는 허가권자)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할 수 있다. - 차량출입구는 당해 주택단지의 외곽도로의 맞은편에 타 용지, 주택단지의 출입구 또는 교차로가 있을 경우 당해 출입구 또는 교차로와 'T' 자 또는 '+' 자 교차 하도록 한다. - 단지내 도로 - 단지내 도로는 차량출입구에서 단지 외곽도로와 접할 때 직각으로 교차되도록 한다. - 단지내 부대복리시설의 주차장은 간선도로에서의 직접 출입을 금한다. - 보행로와 교차하는 지점은 '보행우선구조'로 조성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저감대책 심의의결 내용에 따라 설치하며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주차장은 가급적 비상차량 주차공간을 제외하고 지하주차장으로 설치할 것을 권장하고, 지상주차장 설치시에는 총 주차대수의 20% 이하로 하되 임대주택법에 의한 임대주택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지상주차장 설치시 바닥포장은 환경친화적 소재를 사용할 것을 권장하며, 투수성 포장을 원칙으로 한다. - 단지내 도로포장 - 보수가 용이하며 저속을 유도하는 재료 및 포장패턴을 권장한다. - 단지내 도로의 위계에 따라 재료와 색상을 구분하여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 단지내 보도포장 - 보행의 쾌적성과 식별성을 제고할 수 있는 포장이 되도록 설치하고, 미끄럼을 방지할 수 있는 질감이 거친 재료로 포장할 것을 권장한다. '투수성 포장'을 적극 권장한다.

3) 근린생활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기정:</u> <u>근생1</u> <u>변경:</u> <u>근생1~3</u>	<u>기정:</u> <u>근생1</u> <u>변경:</u> <u>근생1~3</u>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18>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대지내 조경 - 건축물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하고 지상조경부에 대중에 상시 개방될 수 있는 휴식공간(벤치, 파고라 등)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근린생활시설용지의 차량 출입구 조성 1. 차량출입구는 필지당 1개소만 설치하며, 그 폭원은 6.5m를 초과할 수 없다. 2.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인접 필지와 공동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근린생활시설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전주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확보한다.

마. 준주거용지(변경없음)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준주거: 1~3	준주거: 1~3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은 <별표18>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다. • 대지내 조경 - 건축물 전면 또는 측면에 설치하고 지상조경부에 대중에 상시 개방될 수 있는 휴식공간(벤치, 파고라 등)을 1개소 이상 설치할 것을 권장한다.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불허구간 이외에서 차량출입구를 설치한다. - 준주거용지의 차량 출입구 조성 1. 차량출입구는 필지당 1개소만 설치하며, 그 폭원은 6.5m를 초과할 수 없다. 2.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인접 필지와 공동으로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준주거용지내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및 ‘전주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에 적합하게 확보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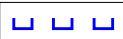
바.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변경)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	대지내 공지	• 대지내 공지 - 대지경계부는 주변지역과 차폐나 쾌적한 보행환경조성을 위하여 녹지공간 등을 두고 교목과 관목을 식재하여 보행쉼터를 형성하도록 권장한다. - 주차장 용지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보도와 접한 부분에 녹지를 조성하도록 권장한다. -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 중 대형 공공시설은 야간활동 지원 및 주요 공간의 장소성 강화를 위해 독특한 소재, 형태, 광원을 지닌 밝은 조명을 설치한다.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구는 가급적 도로위계가 낮은 도로에 설치한다. - 면적 1,000㎡ 이하의 대지내에서는 차량출입허용구간 1개소마다 1개의 차량출입구만을 허용한다. • 주차장 설치기준 - 부설주차장은 ‘주차장법’, ‘전주시 주차장조례’ 등 관련법규와 교통영향분석·저감대책 심의 의결 내용을 따라야 한다. 단, 상기 기준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 부설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1% 내지 3%의 범위 안에서 장애인의 주차수요를 감안하여 장애인전용주차장으로 구분·설치하며, 그 외의 기준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주유1~2	주유1~2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주유소 이용차량의 입구와 출구는 분리하여 설치한다.
<u>기정:</u> <u>유1~2,</u> <u>초1~2,</u> <u>중</u> <u>변경:</u> <u>유1~2,</u> <u>초,</u> <u>중</u>	<u>기정:</u> <u>유1~2,</u> <u>초1~2,</u> <u>중</u> <u>변경:</u> <u>유1~2,</u> <u>초,</u> <u>중</u>	대지내 공지	- 조경 - 도로변에 건축물을 배치하는 경우 그 외곽부에 수림대를 설치하여 방음효과를 높이되, 주변가로와 동일수종을 식재하여 수목에 의한 독특한 가로경관이 창출될 수 있도록 한다.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진출입차량의 안전을 위해 교차로 및 인접대지로부터 10m 내지 20m 이상 이격하여 차량진출입구를 설치한다. - 보행자 동선 - 차량 및 보행자를 위한 출입구 외에 1개 이상의 보행자 출입구를 권장하며, 주 출입구는 그 중 통행이 많은 곳으로 한다. - 보행자 출입구는 학생들의 접근방향을 고려하여 설치하되, 보행자 전용도로나 공원과 면한 학교의 경우에는 그와 연결되게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의	의	대지내 공지	- 공공조경 - 결정도상에 지정된 공공조경은 <별표18>의 ‘공공조경’ 규정에 따라 조성하며, 완충녹지와 연계된 계획을 수립한다.
		교통처리	- 차량출입구 - 차량출입은 2곳 이상 확보하여, 외래이용자 및 응급환자의 이용에 용이하도록 한다.

〈별표18〉 용어의 정의

구 분		계획 내용
공통	지구단위 계획구역	-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 도면표시 : 
	용 지	1. 법조타운용지 : 법원, 검찰청용지 2. 상업·업무용지 : 상업시설용지·업무시설용지 3. 첨단산업지원용지 : 첨단산업지원시설용지 3. 주택건설용지 : 필지형 단독주택용지,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4. 근린생활시설용지 5. 준주거용지 6. 공공시설 및 기타시설용지 : 제1호 내지 제5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용지
가구 및 획지	가 구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획지를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설정한 가구번호에 의해 설정한 가구단위를 말한다.
	획 지	건축이 가능한 토지로, 원칙적으로 개별 개발단위를 말한다.
	필지분할 가능선	- 시장수요 및 여건변화에 따른 융통성 확보를 위해 일정규모 이상 대형 필지에 대하여 지구단위계획 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분할할 수 있는 위치를 지정한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건축물의 용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그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되면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권장용도	도시기능의 효율화를 위해 또는 대상지역의 계획적 기능을 육성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된 용도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정된 용도로 사용하는 용도를 말한다.
	불허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되더라도 그 필지에서 사용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구 분		계획 내용
건축물의 용도	주용도	• 건축연면적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부수용도	• 건축연면적의 10% 이하를 차지하는 용도를 말한다.
	점포주택	• 건물의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주거이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규정한다. 1. 위치 : 1층이하 또는 2층(1층이 필로티 구조일 경우)에 한한다. 2. 규모 : 바닥면적의 합계가 총 연면적(지하층 포함)의 40% 이하여야 한다. 또한, 주차 등을 이유로 조성된 1층부 피로티 부분에 대한 타 용도로의 전환은 일체 불허한다.
	주거동	• 공동주택용지에서 공동주택이 주용도인 건축물을 말한다.
	주동	• 공동주택용지에서 하나의 코어를 사용하는 독립된 공동주택을 말한다.
	부대복리 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에서 정의된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말한다.
	근린생활 시설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0조’ 에서 정의된 용어를 말한다.
건축물의 규모 및 높이	단독형 집합주택	• 개별획지로 구분하지 아니하고, 적정규모의 블록을 하나의 개발단위로 공급하는 블록형 단독주택용지로 공급되는 단위가구내에서 2세대 이상의 독립된 주택을 건축하여 주택은 단독 소유하되 주택을 소유하기 위한 대지 및 기반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부지는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세대 (가구)	•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는 주거공간 단위를 말한다.
	최고층수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최저층수	•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 이상으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한다.
건축선	건축 한계선	•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되어서는 아니 되는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건축 지정선	• 그 선의 지정된 위치에 면한 건축물의 외벽면이 건축지정선 길이의 2/3 이상이 해당 하는 길이만큼 그 선의 수직면에 접하여야 하는 선을 말한다. - 도면표시 : 

구 분	계획 내용
건축물 배치	중층(15층이하) 배치구간 15층 이하의 지정된 층수 이하로 아파트를 배치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직각배치구간 - 직각배치구간의 장변이 면한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건축물의 장변이 직교하여야 하는 구간을 말한다. - 직각배치라 함은 건축물의 수평단면형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판상형, 절곡형 또는 타원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에 대하여 건축물의 장변(또는 주거구부면)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pm 22.5^\circ$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 원형 또는 정방형 : 해당 도로변 또는 대지경계선과 이루는 직교선(접도방향)에 대하여 건축물 주거구부면의 이등분선이 직각으로 배치되어야 한다. 이때 접도방향에 대해 $\pm 22.5^\circ$ 범위 내인 경우 직각으로 배치된 것으로 간주한다. 판상형(타원형) 예시도 정방형(원형) 예시도
건축물 형태 및 외관	건축물의 전면 건축물의 1층 용도를 이용하는 사람을 위한 주된 출입구(보행주출입구)가 설치되는 면을 말한다.
	피로티 구조 보행동선의 연결 및 단지내 옥외공간의 경관성 향상을 위한 것으로, 지상층에 면한 부분에 기둥, 내력벽 등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체 이외의 외벽·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고 개방시킨 구조를 말한다. 이 때, 천정고의 유효높이가 ‘5.5m 또는 2개 층’ 이상이며, ‘폭 10m 또는 주거동 1호 너비’ 이상이어야 한다.
	투시형 셔터 전체의 2/3 이상이 투시가 가능토록 제작된 셔터를 말한다.
	투시형 벽면 외벽면 면적의 50% 이상(1층 벽면지정선이 지정된 벽면은 70% 이상 권장)이 투시가 가능토록 조성된 벽면을 말한다.
	주조색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보조색 -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의 10% 이상 3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강조색 -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구 분	계획 내용
대지내 공지	• “전면공지”라 함은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대지 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로서 공개공지·공공조경 등 다른 용도로 지정되지 아니한 공지를 말한다. 이때, 전면공지는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하며,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단, 공동주택용지에 지정된 전면공지는 개별 조성지침에 의한다. 1. 자유로운 통행의 보장 전면공지에는 ‘보행 지장물’을 설치할 수 없다. 2. 경계부 처리 가. 전면공지는 연결한 보도 및 도로(보도가 없을 경우)와 높이 차가 없이 조성하며, 전면공지와 보도에는 차량 출입 및 주·정차를 금지한다. 다만, 필지형 단독주택용지에서 피로티 하부 주차장을 조성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나. 주차출입구가 설치될 경우, 보행공간으로 차량출입 및 주차가 불가능하도록 주차출입구와의 경계부에 단주 등을 설치한다. 3. 포장 보도와 연결한 전면공지의 포장은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의 재료와 포장패턴을 우선적으로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공부문에서 시행한 보도보다 성능이 우수하고 포장패턴의 조화로우미 인정될 경우 별도의 포장도 가능하다.
	• “공개공지”라 함은 ‘건축법’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일반 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공지를 말한다. 1. 공개공지의 배치 가. 공개공지는 시민의 이용이 편리하고 접근이 용이한 곳의 배치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상위 순으로 대지의 조건에 따라 배치한다. 단, 결정도상에 지정 또는 권장한 위치를 우선 준수한다. - 교차로 가각부(2개 이상의 교차로 일 때 가장 넓은 교차로 가각부에 배치) - 2개 이상의 도로와 접한 경우 가장 넓은 도로쪽 부분 - 1개의 도로와 접한 경우 도로쪽 부분 나. 인접대지나 도로 건너편 대지에 공개공지가 있는 경우 인접 또는 건너편 공개공지와 연계 되게 배치한다. 다. 1개소로 집중 배치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도와 접하는 공개공지의 바닥은 같은 높이로 하되 부득이하게 높이 차를 두는 경우 신체장애인용 경사로를 설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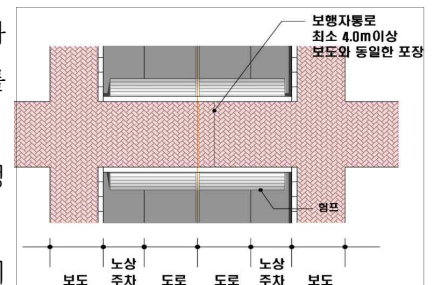
구 분		계획 내용								
대지내 공지	공개공지	2. 진입부의 설치 -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1/2 이상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도록 한다. 3. 공개공지 시설기준 가. 결정도상 규제사항은 표시된 규모 이상으로 확보하며, 권장사항일 경우는 최소 45㎡ 이상 확보한다. 이때, 공개공지에 접한 부분은 담장을 설치할 수 없다. 나. 공개공지 전체면적의 4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녹지로 조성한다. - 녹지의 외곽은 높이 35-50cm의 이동이 불가능한 구조물로 조성하고, 구조물의 상단은 너비가 25cm 이상으로 사람이 걸터앉기에 불편함이 없는 마감 재료로 한다. - 녹지는 수관투영면적의 합이 녹지 총면적의 200% 이상이 되도록 하며, 이때 교목의 수관투영면적은 녹지 총면적의 100% 이상이 되어야 한다. - 녹지에 도입할 수목은 전북지역 자생가능 수종을 원칙으로 하되, 이식과 관리가 용이하고 경관미를 고려하여 선정·식재한다. - 녹지의 지표면은 피복되게 지피식물을 식재한다. 다. 공개공지에는 휴식시설과 경관조성을 위한 조경시설물 및 조명시설을 설치한다. 라. 공개공지 내에는 이용자에게 불편감을 주는 환풍기나 냉각탑 등의 설비시설(이하 “설비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없으며, 공개공지 인근에 설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가리개 등의 시설을 설치한다.								
	공공조경	● “공공조경”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서 건축선 등의 지정으로 대지경계선과 그에 면한 건축물 외벽선 사이에 확보된 대지안의 공지 중 결정도에서 공공조경으로 지정된 공지를 말한다. 이때, 공공조경은 해당 필지의 개발 주체가 건축물의 신축시 조성하며, 조성 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주변 여건에 맞추어 식수대나 둔덕을 조성하되, 우수침투가 가능한 자연지반이 유지되도록 지표면에 초화류(또는 지피식물), 관목류(또는 넝쿨식물) 등을 적절히 혼식하고 상부에 교목을 식재하여 녹지를 조성한다. 단, 차량의 진출입부분은 ‘투수성 포장’으로 하여, 공공조경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한다. 2. 단차리는 우수 배제의 효과를 기할 수 있도록 보도 및 도로와 높이차가 없도록 조성한다. 단, 보행자전용도로와 공공조경의 경계부에는 경계기능과 휴게기능을 함께 겸하는 Seating stone(높이 40cm 이하)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공공조경의 식재기준> <table><tr><th>수 목 구 분</th><th>식재밀도(본/㎡)</th><th>상록비율(%)</th></tr><tr><td>교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td><td>0.3 이상</td><td>20</td></tr><tr><td>관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td><td>0.5 이상</td><td>50</td></tr></table>	수 목 구 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 이상	20	관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 이상
수 목 구 분	식재밀도(본/㎡)	상록비율(%)								
교목 (줄기가 굵고 곧으며, 높이자라는 나무)	0.3 이상	20								
관목 (줄기와 가지의 구별이 분명하지 않고 키가 낮은 나무)	0.5 이상	50								

구 분	계획 내용
대지내 공지	3. 식재는 위의 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다만, 교목의 경우 식재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수고 5m 이상, 수관폭 3m 이상의 교목을 60% 이상 식재하며, 이중 상록수 20%, 낙엽수 80%가 되도록 한다. 4. 단지 내 공원과 인접 시 연계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또한 인접부 수목수종의 이질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유니버설디자인의 적용으로 공원과의 진출입에 장애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u>5. 공공조경 구간 중 지구단위계획 지침도에서 정하는 일부 구간(공공조경(보행로설치))에는 폭 2m 이상의 보행로(통학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u>
	• “단지내 보행로” 라 함은 단지주민 및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통로를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성한다. 1. 도로와의 교차방식 및 도로접합부와의 높이차는 공공보행통로의 기준에 준하여 조성한다. 2. 단지내보행로는 결정도상 표시된 연결부의 위치를 준수토록 하며, 단지내부 동선경로는 단지배치계획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형태는 부드러운 자유곡선의 선형을 권장한다. 단 주변의 개발여건이나 단지의 계획상 연결부의 이동이 필요하다고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연결부의 위치변경이 가능하다.
교통처리	차량출입 허용구간 •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출입이 허용되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차량출입 불허구간 •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출입을 불허하는 구간을 말한다. - 도면표시 : 
	전면도로 • 건축물의 주출입구가 면하고 있는 도로를 말한다.
기타사항	•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주1) 보행우선구조 : 공공보행통로, 보행자전용도로 등 보행자를 위한 동선과 차도가 교차할 경우 보행자를 위한 동선이 우선하는 교차 부분의 구조로서 다음의 각호의 규정에 따라 조성한 구조를 말한다.

1. 차도의 높이는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높이와 같게 조성하여 험프역할을 할 수 있는 구조로 조성한다.
2. 차도의 포장은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포장과 동일하게 한다.
3. 보행자를 위한 동선의 폭은 최소 4.0m 이상으로 한다.

<보행자우선구조 예시도>



<보행우선구조 조성사례>



주2) 보행지장물 : 보행자의 식별성과 접근성을 저해하는 주차장, 담장, 환기구, 쓰레기 적치장, 화단, 이동식 화분 등의 시설물과 건물외벽이나 지하층으로부터 보행을 방해하는 물체(개폐식 창호나 출입문, 지하층 상부, 주유관, 배수관 파이프, 맨홀뚜껑 등)의 돌출 등 보행 및 보행흐름에 지장을 주는 시설물을 말한다.

주3) 투수성포장 : 투수성 콘크리트 등의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하여 포장하거나 잔디블록 등과 같이 포장면 상단에서 지하의 지반으로 물이 침투될 수 있는 조립식 포장방식을 사용하여 포장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투수성 포장이라 하더라도 경사도가 3%를 초과하는 곳은 불투수성포장으로 본다.

〈별표19〉 색채계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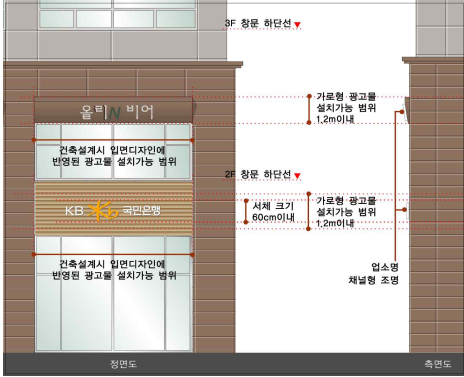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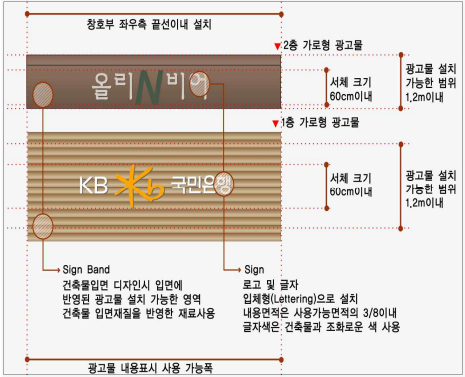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	기본방향	- 색채계획은 일괄된 도시색조의 연출을 통하여 지구를 특성화 한다. - 색채 가이드라인은 현재 국내 공업규격(KS)으로 제정되어 있으며, 교육용으로 채택된 먼셀(Munsell)표색계를 기준으로 하여 단독주택, 공동주택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단독1~2	단독1~2	단독 주택용지	- 단독주택용지의 건축물 외벽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 주조색은 다양한 색상사용을 허용하되 명도는 중명도 이상 채도는 7 이하로 제한하여 밝고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 보조색은 주조색과 유사한 계열로 2차 혼합색을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 강조색은 자유스럽게 사용하도록 하지만, 형광색과 원색 사용을 지양한다. - 강조색은 건축물 모서리나 층간에 사용함으로써 선의 이미지를 강조, 경쾌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도록 권장한다. - 사용색은 아래의 그림에서 제시되는 색상을 사용하되, 재료색을 사용하는 경우 제시된 색과 색차가 적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단독주택용지 색채계획> <table><tr><th colspan="4">주조색</th><th colspan="3">보조색</th><th colspan="2">강조색</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able>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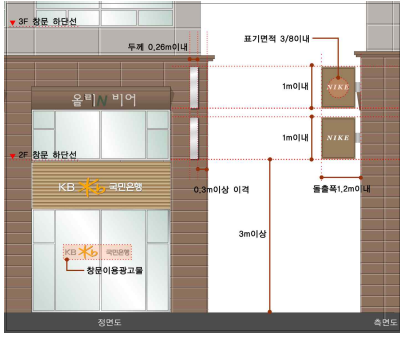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u>가정:</u> <u>A1~2</u> <u>B1~3</u> <u>C1~2</u> <u>T1~2</u> <u>변경:</u> <u>A1~2</u> <u>B1~3</u> <u>C1~2</u> <u>T</u>	<u>가정:</u> <u>A1~2</u> <u>B1~3</u> <u>C1~2</u> <u>T1~2</u> <u>변경:</u> <u>A1~2</u> <u>B1~3</u> <u>C1~2</u> <u>T</u>	공동주택 용지	- 공동주택용지의 건축물 외벽 색채는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으로 구분하여 적용한다. 1. 주조색은 밝은 색상을 사용하여 개방감을 확보한다. 2. 보조색은 주조색과 동색계열로 2~3차 혼합색으로 하여 안정되고 고상한 색감을 연출한다. 3. 강조색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지만, 원색 사용을 지양하고 명도는 중명도 이상 채도를 7 이하로 제한함으로써 밝으면서도 차분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4. 강조색은 저층부나 축벽 그래픽부분에 주로 사용하도록 한다. - 사용색은 아래의 그림에서 제시되는 색상을 사용하되, 재료색을 사용하는 경우 제시된 색과 색차가 적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공동주택용지 색채계획> <table><tr><th colspan="4">주조색</th><th colspan="3">보조색</th><th colspan="2">강조색</th></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1002-R</td><td>1005-Y20R</td><td>2005-Y20R</td><td>1005-Y30R</td><td>2502-R</td><td>3010-Y10R</td><td>3005-Y20R</td><td>4502-R</td><td>5005-Y20R</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2010-Y40R</td><td>0502-Y46R</td><td>1002-Y50R</td><td>1502-Y50R</td><td>3010-Y20R</td><td>3010-Y40R</td><td>3005-Y50R</td><td>5010-Y30R</td><td>5010-Y50R</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1005-Y50R</td><td>2005-Y50R</td><td>1005-Y70R</td><td>1005-R</td><td>4005-Y50R</td><td>3502-Y</td><td>2502-Y</td><td>5020-Y70R</td><td>6020-Y90R</td></tr><tr><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d></tr><tr><td>1101-G73Y</td><td>1002-B</td><td>1002-R50B</td><td>1500-N</td><td>4005-G20Y</td><td>3010-R90B</td><td>3000-N</td><td>5010-B10G</td><td>6000-N</td></tr></table>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1002-R	1005-Y20R	2005-Y20R	1005-Y30R	2502-R	3010-Y10R	3005-Y20R	4502-R	5005-Y20R										2010-Y40R	0502-Y46R	1002-Y50R	1502-Y50R	3010-Y20R	3010-Y40R	3005-Y50R	5010-Y30R	5010-Y50R										1005-Y50R	2005-Y50R	1005-Y70R	1005-R	4005-Y50R	3502-Y	2502-Y	5020-Y70R	6020-Y90R										1101-G73Y	1002-B	1002-R50B	1500-N	4005-G20Y	3010-R90B	3000-N	5010-B10G	6000-N
주조색				보조색			강조색																																																																													
1002-R	1005-Y20R	2005-Y20R	1005-Y30R	2502-R	3010-Y10R	3005-Y20R	4502-R	5005-Y20R																																																																												
2010-Y40R	0502-Y46R	1002-Y50R	1502-Y50R	3010-Y20R	3010-Y40R	3005-Y50R	5010-Y30R	5010-Y50R																																																																												
1005-Y50R	2005-Y50R	1005-Y70R	1005-R	4005-Y50R	3502-Y	2502-Y	5020-Y70R	6020-Y90R																																																																												
1101-G73Y	1002-B	1002-R50B	1500-N	4005-G20Y	3010-R90B	3000-N	5010-B10G	6000-N																																																																												
BL1	BL1	한스타일	- 한스타일 적용 대상지에 대해선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도시연구원에서 수행중인 연구결과 및 ‘공동주택 한옥디자인’ (2009. 1, 대한주택공사)의 제안내용을 따르는 것을 권장한다. - 무채색 계열의 전통건축의 색채팔레트 사용을 권장한다. - 배색은 편하고 색이 지루할 정도로 비슷한 색을 통해 한스타일 배색을 규정한다. - 사용색은 아래의 그림에서 제시되는 색상을 사용하되, 재료색을 사용하는 경우 제시된 색과 색차가 적은 범위 내에서 사용하도록 한다. <한스타일 색채계획> <table><tr><td></td><td></td><td></td></tr><tr><td>흑색 黑色 #343437</td><td>치색 紺色 #686A6B</td><td>소색 素色 #D9C9B4</td></tr><tr><td>R52 G52 B55 / C93 M89 Y83 K52</td><td>R104 G106 B107 / C72 M64 Y62 K4</td><td>R217 G201 B180 / C10 M15 Y26 K5</td></tr><tr><td></td><td></td><td></td></tr><tr><td>지백색 紙白色 #E4DFCC</td><td>설백색 雪白色 #DEE7E7</td><td></td></tr><tr><td>R228 G223 B204 / C6 M6 Y17 K4</td><td>R222 G231 B231 / C12 M4 Y7 K0</td><td></td></tr></table>				흑색 黑色 #343437	치색 紺色 #686A6B	소색 素色 #D9C9B4	R52 G52 B55 / C93 M89 Y83 K52	R104 G106 B107 / C72 M64 Y62 K4	R217 G201 B180 / C10 M15 Y26 K5				지백색 紙白色 #E4DFCC	설백색 雪白色 #DEE7E7		R228 G223 B204 / C6 M6 Y17 K4	R222 G231 B231 / C12 M4 Y7 K0																																																																
흑색 黑色 #343437	치색 紺色 #686A6B	소색 素色 #D9C9B4																																																																																		
R52 G52 B55 / C93 M89 Y83 K52	R104 G106 B107 / C72 M64 Y62 K4	R217 G201 B180 / C10 M15 Y26 K5																																																																																		
지백색 紙白色 #E4DFCC	설백색 雪白色 #DEE7E7																																																																																			
R228 G223 B204 / C6 M6 Y17 K4	R222 G231 B231 / C12 M4 Y7 K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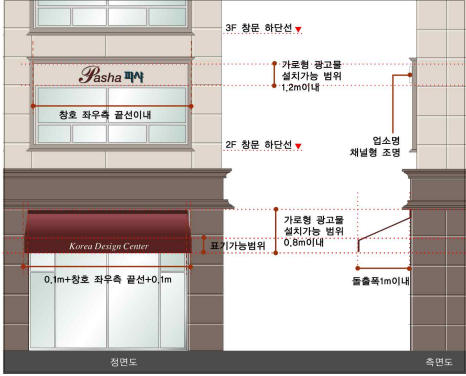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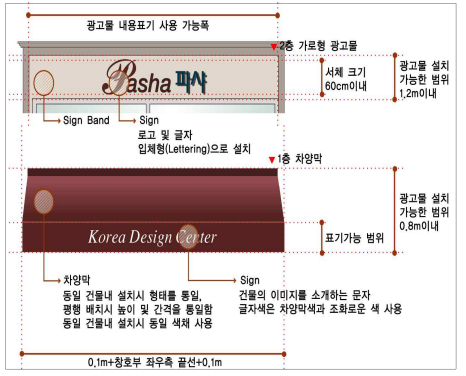
1) 한스타일은 전주한옥마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발간된 각종 연구자료,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된 한스타일 내용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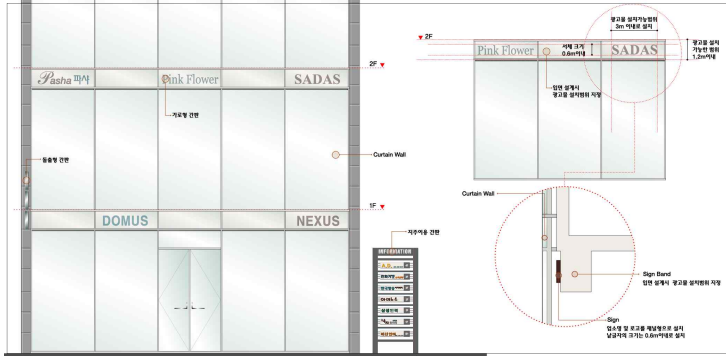
〈별표20〉 옥외광고물에 관한 계획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기본방향	- 전주 만성 도시개발구역내 광고물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함으로써 광고물의 고유목적인 정확한 정보전달과 함께 도시경관의 질적 향상을 꾀한다. - 건축과 조화되고 예술성을 확보한 옥외광고물 경관을 형성한다. - 가로별 차별화 아이টে를 설정하고 이에 따른 형태, 색채, 재료 등의 기준을 마련한다. - 본 지침에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전주시 공공디자인 가이드 라인, 전주 아름다운 간판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을 따른다.
		기준의 구성과 적용방법	- 옥외광고물에 대한 기준은 ‘일반적 설치기준’, ‘광고물 형식별 기준’ 및 ‘건축물의 용도와 형식을 고려한 특별기준’ 으로 구분되며, 특별한 명기가 없는 한 세 가지 기준 모두에 적합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용도와 형식을 고려한 특별규정’ 은 ‘일반적 설치기준’, ‘광고물 형식별 표시기준’ 에 우선하므로 각 기준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와 형식을 고려한 특별규정’ 에 따라야 한다. ‘일반적 설치기준’ 과 ‘광고물 형식별 표시기준’ 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광고물 형식별 표시기준’ 에 따라야 한다.
		일반적 설치기준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는 1개로 제한한다. 단, 다음의 경우는 개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의료기관·약국을 표시하는 경우 - 연립주택이용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 도로의 곡각지점에 접한 업소로서 2층 이하 정면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 필로티에 접한 건축물의 저층부에 설치하는 가로/세로 1m 미만의 행거형 간판 - 하나의 대지에 1개 업소만 있는 경우에 보조로 설치하는 간판. 단, 2개 이내로 제한한다. - 간판에 사용되는 재료는 건축외장재의 색채와 건축물의 이미지와 조화되도록 한다. - 광고물(간판 등)의 바탕색은 건물 외장재와 조화되도록 하고 고채도색 및 원색의 사용은 금한다. 다만, 기업의 CI로 개발된 디자인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 구체적인 색채 적용기준은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에 따른다. - 건축물의 벽면을 이용하는 간판은 주변 광고물과의 관계, 접촉거리 등을 고려하여 크기와 설치위치를 결정하며 간판의 형상은 건물의 형태와 조화되도록 한다. - 광고물 등은 교통·통행 등에 지장이 없도록 표시하며, 풍압이나 충격 등에 의하여 떨어지거나 넘어지지 않아야 한다. - 문자의 서체, 색채 등 표시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에 따른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광고물 종류별 세부 표시방법	- 전기를 이용하는 간판의 표시방법 - 간판의 휘도(광원의 밝기)는 낮게 하여 눈부심을 최소화한다. - 조명광원 설치하는 광고물 내부에 설치하는 방식과 외부에 설치하는 방식 모두 가능하다. - 주변과의 조화를 위하여 발광조명(네온사인, 점멸방식 등)은 사용을 금한다. - 신소재를 이용한 조명방식을 적극 권장한다. - 광고물은 세로형간판, 옥상간판, 전자식 광고물은 원칙적으로 설치 할 수 없다. - 가로형간판 표시방법 2층 이하의 업소에 한하여 업소당 1개를 설치한다. - 가로형 간판의 가로는 창호 좌우측 끝선이나, 세로는 1.0m 이내로 한다. - 광고물 낱글자의 크기는 0.6m× 0.6m 이내로 하며, 글씨의 높이는 간판 높이의 2/3 이내로 한다. <가로형간판 표현방법 예시도>   - 돌출간판의 표시방법 -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업소는 돌출간판을 설치할 수 있다. - 설치위치는 지상으로부터 3m 이상으로 한다. - 광고물의 상단은 최상층 창문 상단선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건축물 좌측 또는 우측 끝선에서 0.3m 이상 간격을 두고, 일렬로 한다. - 돌출간판의 크기는 가로 1.2m이내, 세로 1m 이내로 설치하고 두께는 0.26m 이내로 한다. 표기내용 면적은 총면적의 3/8 이내로 표기한다.
			- 창문이용광고물 표시기준 - 창문이용광고물은 창문 또는 출입문에 직접 부착하는 광고물과 창문 또는 출입문에서 1m 이내에 업소를 알리는 내용을 외부에서 인지 가능하도록 설치한 광고물을 말한다. 1층 입주업소에 한하여 1개 설치가 가능하며, 광고물 설치총량에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재료는 투시가 가능한 재료(반투명 등)를 사용하며, 표시면적은 창문 또는 출입문 면적의 1/5 이내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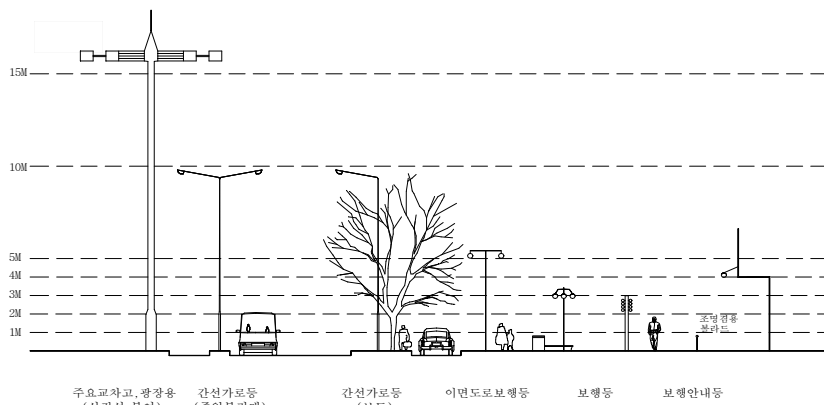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광고물 종류별 세부 표시방법	● 지주형이용간판의 표시방법 1. 지하층 및 3층 이상의 업소는 지주이용간판을 설치할 수 있으며 한 건물에 2개까지 설치 가능하다. 2. 지주이용간판은 높이 3.5m이내, 폭 1.5m 이내로 설치하며, 1면의 면적은 3㎡ 이내로 한다. 3. 지주이용간판은 주변이나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설치하며 설치 가능한 위치는 다음과 같다. 가. 대지경계선에 위치할 경우는 건축정면벽면선 이내로 한다. 나. 건축주변 녹지(화단)에 설치할 경우에는 녹지(화단)내로 한다. 다. 건축출입구 주변. 단, 출입구와 평형하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인접건물과 만나는 지점. 단, 인접건물측면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돌출형 간판 표시방법 예시도>  <창문이용 간판 표시방법 예시도>  <지주이용형 간판 표시방법 예시도>    
			● 광고물의 형식 중 “차양막” 설치기준 1. 차양막은 1층과 2층 업소에 한하여 설치 가능하며, 동일 층에서는 같은 형태와 같은 높이로 하고 너비는 단위창문 폭을 넘지 않도록 한다. 2. 차양막 가로는 창문 폭에서 좌우로 0.1m 이내로 하고, 돌출 폭은 1m 이내, 높이는 0.8m 이내로 한다. 표시위치는 차양막의 끝단 수평면에 표시한다. 차양막 재료는 비닐 사용을 금하고, 비와 눈, 햇빛에 강한 소재로 내구성과 색상의 지속성을 지닌 캔버스를 사용한다. 3. 인접 업소의 색채와 유사하게 설치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광고물 종류별 세부 표시방법	4. 차양막 하단(바닥)면은 막혀있지 않는 열려있는 형태로 한다. 5. 차양막 내부에 조명은 설치할 수 있으나 폐쇄형 조명, 네온 및 점멸방식의 조명 사용을 금하고 필요시 내·외부에 조명을 설치할 수 있다. • 건물명은 건축물 정면의 좌측 상단 벽면에 설치한다. <차양막 간판 표시방법 예시도>  
		건축물의 용도와 형식을 고려한 특별규정	• 아파트 단지내 광고물 설치기준 (가로형간판) 1층부에 입주한 업소는 지정된 위치에 설치하고, 2층에 입주한 업소는 2층 창문 상단선에 돌출 바(Sign Bar)위에 설치한다. (돌출간판) 건물 좌·우측면에 일렬로 설치하고 가로 0.8m 이내, 세로 0.8m 이내, 두께 0.26m 이내로 한다. - 대지경계선에 위치할 경우는 건축정면벽면선 이내로 한다. - 건축주변 녹지(화단)에 설치할 경우에는 녹지(화단)내로 한다. - 건축출입구 주변. 단, 출입구와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 인접건물과 만나는 지점. 단, 인접건물측면과 평행하게 설치하는 경우에 한 한다. <아파트 단지내 상가의 조성 예시도>  • 커튼월 간판의 설치기준 - 가로형간판을 설치하며, 광고물의 표시는 내부보 또는 내부판을 설치하여 표시가능하다. - 가로형간판의 크기는 가로 3m 이내, 세로 1.2m 이내로 한다. - 설계위치는 건축 설계시 입면디자인에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반영하고 광고물의 설치 위치를 지정하여 표시한다.

도면 번호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건축물의 용도와 형식을 고려한 특별규정	<커튼월 간판의 조성 예시도> 
		행정예 관한 사항	• 택지 및 아파트 상가 공급시 계약서에 아래의 사항을 명시 1. 택지를 공급하는 자는 택지공급시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된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에 명시한다. 2. 아파트 상가를 공급하는 자는 상가공급계약서에 옥외광고물 설치에 관한 설치 크기 및 위치 등을 지정하는 내용을 명시한다. • (건축사의 의무) 옥외광고물이 건축물의 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건축가는 건축설계시 옥외광고물의 설치위치를 표시한다. • (건축허가 신청시 검토사항) 건축주는 건축허가(신고·사업승인 등) 신청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건축허가권자는 이를 검토한다. • (건축허가 사용승인시 검토사항) 건축허가권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할 때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와 일치하도록 공사가 되었는지를 확인한다. • (건축물 분양·임대하는 자의 의무) 건축물의 분양·임대를 하는 경우 분양·임대계약서 등에 지구단위계획의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과 건축허가시 승인된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을 명시한다. • 옥외광고물 설치계획서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한다. - 대상지의 위치도를 도면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 옥외광고물 관련 지구단위계획 지침 및 ‘전주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의 준수내용을 글로 기입하여 제출한다. - 건축입면에 간판 부착위치 및 크기 등을 정면도, 배면도, 좌우측면도에 표기한 광고물 설치도를 제출한다. - 임대·분양 계약서에 삽입할 광고물 설치관련 내용과 관련부서 및 관리자를 표기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제출한다.

〈별표21〉 야간경관 계획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	야간경관의 계획방향	- 야간경관 계획방향 - 가로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범죄 및 재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와 아울러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한다. - 가로등과 보행등으로 구분한다. - 가로등은 싱글암(Single-Arm)을 주로 사용하며 보행등은 광장등, 장식등, 보행등, 녹지등 등으로 구분하여 사용한다. - 본 지침에 제시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제정중인 ‘전주 야간경관계획’을 따른다.
		가로등 설치기준	- 가로등 설치기준 - 조명시설은 한국공업규격 도로조명기준(KSA3701)에서 정한 규정에 따라 설치한다. - 도로의 성격, 기능, 폭원에 따라 적합한 광원, 조도, 배치방식, 간격, 높이 등을 결정하여 설치한다. - 가로변 일반구간은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적절한 밝기를 유지하고, 교차로, 횡단보도, 도로 구조가 변화하는 곳, 교통안전시설이 집중 설치되는 지점 및 사고다발 예상지점에는 주간과 거의 같은 수준 밝기를 유지한다. - 보도의 보행자용 가로등은 상호 교호형식으로 배치하고 조명이 발산하는 색감은 가로특성에 맞게 유도·조정한다. - 도로변의 가로등주는 테이퍼폴이나 주철폴을 사용하고 중심지역, 공원, 보행자공간에는 주철폴을 사용한다.
		가로의 조명	- 가로의 조명 - 가로의 조명은 차량의 안전한 교통소통과 아울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하도록 범죄 및 재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이와 아울러 도시의 정체성과 도시미관을 고려한다. - 간선가로경관축의 광원은 효율이 높고 수명이 길어 경제적이며, 안개에 대한 투시성이 좋아 가로조명에 적합한 고압나트륨램프를 기본으로 하되, 상업·업무용지, 공원 등과 접한 구간은 중앙분리대 또는 보도측에 메탈헬라이드램프 등 2가지 광원을 혼합하여 독특한 야간경관을 창출한다. - 가로등의 조도는 최소 20lux 이상 확보하고 도로의 기능 및 폭원 등을 고려하여 차등적으로 계획한다. - 중앙분리대가 있는 경우 중앙가로등과 가로변 가로등을 병렬로 마주보기식으로 설치한다. - 이면도로의 가로등은 중간높이의 자연색조 등을 사용하여 가로변 가로등만 설치하되 조명보강 부분은 보행등을 보완하여 설치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	야간 경관에 관한 사항	 주요차도, 광장용 (상정성 구역) 간선가로등 (중앙분리대) 간선가로등 (보도) 이면도로보행등 보행등 보행안내등																		
			<야간조명경관 디자인> <table><tr><th>구 분</th><th>계획대상</th><th>계획방향</th></tr><tr><td>진출입부</td><td> - 도시 및 시가지 진출입 도로변 - 가로시설물 등 </td><td> -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게 상정성 창출 </td></tr><tr><td>랜드마크 (건축물 및 시설물)</td><td> - 건축물 및 시설물 - 공간적 랜드마크(광장 등) </td><td> - 시각적 요소 강화(장소성, 방향성) </td></tr><tr><td>상징 가로축</td><td> - 상업·업무용지 상징가로변 - 파크웨이 </td><td> -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야간경관 표현 </td></tr><tr><td>하천 및 수로변</td><td> - 기지재 수변공원 </td><td> - 화려한 수변경관과 야간경관 창출 </td></tr><tr><td>한스타일</td><td> - 한스타일 적용 대상지 </td><td> - 아늑함과 낭만적인 공간연출 구현 </td></tr></table>	구 분	계획대상	계획방향	진출입부	- 도시 및 시가지 진출입 도로변 - 가로시설물 등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게 상정성 창출	랜드마크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물 및 시설물 - 공간적 랜드마크(광장 등)	시각적 요소 강화(장소성, 방향성)	상징 가로축	- 상업·업무용지 상징가로변 - 파크웨이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야간경관 표현	하천 및 수로변	기지재 수변공원	화려한 수변경관과 야간경관 창출	한스타일	한스타일 적용 대상지	아늑함과 낭만적인 공간연출 구현
		구 분	계획대상	계획방향																	
진출입부	- 도시 및 시가지 진출입 도로변 - 가로시설물 등	도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킬 수 있게 상정성 창출																			
랜드마크 (건축물 및 시설물)	- 건축물 및 시설물 - 공간적 랜드마크(광장 등)	시각적 요소 강화(장소성, 방향성)																			
상징 가로축	- 상업·업무용지 상징가로변 - 파크웨이	자연과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통야간경관 표현																			
하천 및 수로변	기지재 수변공원	화려한 수변경관과 야간경관 창출																			
한스타일	한스타일 적용 대상지	아늑함과 낭만적인 공간연출 구현																			
계획지침		- 계획지침 - 진출입부 야간조명경관 설치권장지역 (주간선도로 및 보조간선도로변) - 인지성 강조를 위하여 강한 조명을 사용한다. - 라이트업 계획을 통해 특화된 야간경관을 확보한다. - 게이트 및 진출입 시설물에 하부조명의 상향 및 측향식 조명을 강화하여 야간의 가로환경 및 인지도를 부각시킨다. - 랜드마크 야간조명경관 설치권장지역 (광1, 광2) - 조경 및 시설물 등에 일루미네이션(illumination)기법을 사용한다. - 빛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랜드마크 주변을 조명으로 연출한다. - 빛의 강약 조절, 높이에 따라 색온도차를 두어 상승감을 연출하여 랜드마크의 형태를 부각한다. - 본 지침 랜드마크에 관한 사항에 의해 지정된 랜드마크를 중심으로 야간조명경관 사업을 한다. - 한스타일 적용 대상지(블록형단독1) - 청사초롱 모티브의 조명사용을 권장한다. - 주거동 지붕형상이 야간경관시 전체 한스타일¹⁾ 이미지가 연출될 수 있도록 조명 디자인을 유도하는 것을 권장한다.																			

도면 번호	위치	구 분	계 획 내 용		
공통	-	계획지침	<조명경관 차별화 방안>		
			구 분	주간선도로(변)	집산도로(변)
			조도	3lux 이상	20lux 이상
			높이	10 ~ 20m	5 ~ 10m
			조명기법	실루엣기법 빔 플레이어	실루엣 기법 업.다운 라이팅
			광원	벽열전구, 할로겐램프, 고압 나트륨등	수은램프, 형광수은램프
			배치방식	마주보기식	어긋나기식
			비고	내부 투광조명 벽면 및 창호의 강조조명	광고물의 조명 장식조명 진입부 유도조명

1) 한스타일은 전주한옥마을 및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에서 발간된 각종 연구자료, 지구단위계획 등에 포함된 한스타일 내용을 말한다.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S=1/3,000)

- 별첨 4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S=1/3,000)

- 별첨 5

별첨

1.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S=1/3,000)
2.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S=1/3,000)
3.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도 (S=1/3,000)
4.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S=1/3,000)
5.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지구단위계획결정도 (S=1/3,000)